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시정권고 전체 목록

제2017-1호	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대상보도	인터넷 아주경제 2016년 12월 8일자 사회면 「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 우병우 행방에 이○○ 변호사 “이곳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 어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관해 보도하면서 증인의 자택 주소를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이 있는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호	강원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강원신문 2016년 12월 30일자 포토존면 「강릉소방서, ○○면 ○○리 주택화재 진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화재 사고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화재 피해자의 주소 및 주택 외관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호	뉴데일리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데일리 2016년 12월 19일자 글로벌면 「한류 담당」 ○○대사관 참사관, 미성년자 성범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 주재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외교관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4호	온라인 중앙일보	2016년 12월 19일	국제	○○ 주재 한국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영상 공개 '일파만파'	인터넷신문
제2017-5호	월드투데이	2016년 12월 27일	사회	○○ 외교관 성추행, 파면 처분 내려져	인터넷신문
제2017-6호	인터넷 국제신문	2016년 12월 19일	사회	[영상] ○○서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하고도 "신고하지 말라"는 외교관	인터넷신문
제2017-7호	조선닷컴	2016년 12월 19일	연예	○○ 외교관, "외교부라고 하지말고 성교부라고 해라...윤창중 생각나네 이래서 안에서 새는 비가지 밖에서도 샌다" 너와 뽀뽀하고 싶어 14세 소녀 성추행 동영상 파문	인터넷신문
제2017-8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2016년 12월 20일	사회	○○ 교민이 전한 '韓 외교관 방송'의 충격적 내용	인터넷신문

제2017-9호	주식회사 충북일보
대상보도	충북일보 2016년 12월 27일자 9면 「○○ 참사관이 구겨버린 국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 주재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외교관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10호	인터넷 충북일보	2016년 12월 26일	오피니언	○○ 참사관이 구겨버린 국격	인터넷신문
제2017-11호	여성신문	2016년 12월 29일	11면	[서민의 페미니즘 혁명] 유혹 견딜 자신 없다면 화학적 거세 어때요?	주간지
제2017-12호	인터넷 여성신문	2016년 12월 29일	오피니언	[서민의 페미니즘 혁명] 유혹 견딜 자신 없다면 화학적 거세 어때요?	인터넷신문
제2017-13호	월요신문	2016년 12월 27일	25면	현지교민 분노 “한국 외교관이 나라 망신시켜”	주간지
제2017-14호	인터넷 월요신문	2016년 12월 28일	사회	외교부, ○○ 미성년 성추행한 외교관 파면	인터넷신문
제2017-15호	포커스뉴스	2016년 12월 20일	사회	[단독] 20일 귀국 ○○ 외교관… “○○인 한국어 교사 성추행, 케이팝 압표 장사 소문”	뉴스통신
제2017-16호	데일리전북	2016년 12월 20일	전국/국제	[단독] 20일 귀국 ○○ 외교관… “○○인 한국어 교사 성추행, 케이팝 압표 장사 소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17호	인터넷 법무경찰신문	2016년 12월 20일	사회	‘○○ 외교관’ 박○○ 성추행에 교민들 분노 ‘활활’	인터넷신문
제2017-18호	부산닷컴	2016년 12월 20일	사회	○○ 한국 외교관 성추행에 한인회 “한 개인의 일탈이다”	인터넷신문
제2017-19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2016년 12월 19일	경제	○○서 한국어 가르치는 박○○ 외교관...강의실 대부분 여학생	인터넷신문
제2017-20호	인터넷 중부일보	2016년 12월 20일	정치	현지 교민이 밝힌 ○○ 주재 한국 외교관 “완전히 진짜 나쁜 놈, 술주정뱅이예다...”	인터넷신문
제2017-21호	인터넷 한국스포츠헤럴드 경제	2016년 12월 20일	사회/문화	○○ 외교관 성추행? 한국 교민 “내 부인한테도 추파 던진 쓰레기”	인터넷신문
제2017-22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6년 12월 20일	법&이슈	주○○ 외교부 박○○ 참사관 국내로 소환...한인회, 혐한 분위기 염려 ‘좌불안석’	인터넷신문
제2017-23호	THE KOREA NEWS	2016년 12월 20일	사회	박○○ 20일 귀국...“○○인 한국어 교사 성추행, 케이팝 압표 장사 소문”	인터넷신문

제2017-24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유한회사
대상보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년 12월 27일자 사회면 「‘기내난동’ 임○○은 이달 말과 1월에도 대한항공을 예약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됐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항공기 내 폭행사건 피의자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5호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대상보도	메트로신문 2016년 12월 21일 사회면 「리차드막스 페이스북에 공개된 'KE 4시간 소동'...“나와 승객이 나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항공기 내 폭행사건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2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 게재순서는 의결번호순이 원칙이나 제2017-47호~제2017-50호의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하여 아래 목록에 포함함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6호	미디어펜	2016년 12월 22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모 씨, 유출 영상 속 승무원에게 “씨X, XX년” 침 뱉으며 발길질	인터넷신문
제2017-47호	이타임즈	2016년 12월 21일	사회	리차드막스 페이스북에 공개된 'KE 4시간 소동'...“나와 승객이 나서”	인터넷신문
제2017-48호	인터넷 동포투데이	2016년 12월 23일	뉴스	대한항공 기내 난동...“승무원들 대처법 몰라”	인터넷신문
제2017-49호	인터넷 시민일보	2016년 12월 22일	연예가 소식	대한항공 기내난동男, 영상 유출... 승무원에게 침 뱉으며 “씨X, XX년” 복부 발길질까지	인터넷신문
제2017-50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6년 12월 21일	사회	'기내 취객' 리차드 막스 제압, 기내 난동 초과의사는 징역 3년형 받기도...	인터넷신문

제2017-27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세계일보 2016년 12월 27일자 10면 「기내 난동 금수저」 사전 구속영장 신청」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항공기 내 폭행사건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2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61건)

- 게재순서는 의결번호순이 원칙이나 제2017-51호~제2017-110호의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하여 아래 목록에 포함함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8호	인터넷 아주경제	2016년 12월 28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내일 구속 여부 결정	인터넷신문
제2017-51호	서울경제	2016년 12월 28일	14면	“기내서 난동부리면 대한항공 못탄다”	중앙일간지
제2017-52호	아주경제	2016년 12월 29일	23면	대한항공 기내 만취 난동 법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	중앙일간지
제2017-53호	조선일보	2016년 12월 30일	A10면	대한항공 기내 난동범 구속	중앙일간지
제2017-54호	한국일보	2016년 12월 28일	12면	기내 만취난동 임씨, 대한항공 첫 탑승 거부 조치	중앙일간지
제2017-55호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1월 4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마약 투약 의혹’ 벗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6호	경기신문	2017년 1월 5일	19면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씨 기소의견 檢 송치	지역일간지
제2017-57호	인터넷 경기신문	2017년 1월 4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씨 기소의견 檢 송치	인터넷신문
제2017-58호	경기일보	2016년 12월 30일	7면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구속	지역일간지
제2017-59호	인터넷 경기일보	2016년 12월 29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구속…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상해 혐의	인터넷신문
제2017-60호	국제신문	2016년 12월 28일	8면	대한항공 기내난동자에 테이저건 사용한다	지역일간지
제2017-61호	인터넷 국제신문	2016년 12월 27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 난동자에 테이저건 사용한다	인터넷신문
제2017-62호	기호일보	2016년 12월 30일	18면	기내 난동 30대 피의자 ‘구속’	지역일간지
제2017-63호	인터넷 기호일보	2017년 1월 5일	사회	기내난동 피의자 검찰송치…마약은 음성	인터넷신문
제2017-64호	이데일리	2016년 12월 28일	8면	‘손님은 왕’이 자초한 기내난동… 안전은 뒷전인 대한항공	지역일간지
제2017-65호	전국매일신문	2016년 12월 27일	15면	‘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기억나지 않아… 죄송”	지역일간지
제2017-66호	인터넷 전국매일신문	2016년 12월 26일	사회	‘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기억나지 않아 …죄송 “	인터넷신문
제2017-67호	뉴시스	2016년 12월 27일	경제	대한항공, 기내난동 블랙리스트 고객 안받는다	뉴스통신
제2017-68호	연합뉴스	2017년 1월 4일	최신기사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뉴스통신
제2017-69호	나눔신문	2017년 1월 4일	사건사고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인터넷신문
제2017-70호	노컷뉴스	2016년 12월 29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구속…사건발생 9일만	인터넷신문
제2017-71호	뉴데일리경제	2016년 12월 27일	경제	대한항공, 기내 난동 임○○씨에 국내 최초 ‘탑승거부’ 조치	인터넷신문
제2017-72호	뉴스핌	2016년 12월 27일	사회	‘기내난동’ 대한항공, 승객 블랙리스트 만든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73호	더팩트	2016년 12월 27일	경제	대한항공, 기내난동 승객에게 사상 첫 탑승 거부 조치	인터넷신문
제2017-74호	매경닷컴	2016년 12월 27일	사회	경찰, 기내난동 피의자에 사전구속영장 신청...‘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 적용	인터넷신문
제2017-75호	민중의소리	2016년 12월 30일	사회	‘기내난동’ 피의자 구속, 안전운항 저해폭행죄 적용	인터넷신문
제2017-76호	베타뉴스	2016년 12월 28일	종합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씨에 탑승 거부 조치...네티즌 ‘땅콩 회항’ 조현아 언급	인터넷신문
제2017-77호	브레이크뉴스	2017년 1월 4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인터넷신문
제2017-78호	세계닷컴	2016년 12월 26일	사회	‘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
제2017-79호	소비자경제	2016년 12월 27일	종합	인천공항경찰대, 항공기내 난동 승객 구속영장 신청	인터넷신문
제2017-80호	시사위크	2016년 12월 26일	경제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 씨, 일주일 만에 경찰 출석	인터넷신문
제2017-81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2016년 12월 27일	법원 검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에 첫 탑승거부 조치	인터넷신문
제2017-82호	아이크레뉴스	2017년 1월 4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구속상태로 검찰 송치	인터넷신문
제2017-83호	연합경제	2017년 1월 4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검찰 송치	인터넷신문
제2017-84호	인터넷 경인매일	2016년 12월 27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 탑승거부 조치 결정	인터넷신문
제2017-85호	인터넷 경인일보	2017년 1월 4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검찰 송치... 마약 검사는 ‘음성’	인터넷신문
제2017-86호	인터넷 국민일보	2016년 12월 29일	시사	기내난동 임○○씨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인터넷신문
제2017-87호	인터넷 뉴스웨이	2016년 12월 27일	산업	대한항공, 기내 난동 임○○씨 탑승거부 조치	인터넷신문
제2017-88호	인터넷 매일신문	2016년 12월 26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내일 사전 구속영장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89호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1월 4일	사건 · 사고	기내난동 피의자 임○○, 기소 의견 검찰 송치...마약은 '음성' 판정	인터넷신문
제2017-90호	인터넷 비주얼다이브	2016년 12월 27일	사회	기내난동 피의자, '땅콩 회항' 조현아와 같은 죄 적용	인터넷신문
제2017-91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1월 4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男' 마약 투약 의혹 벗었다	인터넷신문
제2017-92호	인터넷 시사뉴스피플	2016년 12월 27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승객에 탑승 거부...제재 강화 나서	인터넷신문
제2017-93호	인터넷 영남일보	2016년 12월 26일	사회	경찰 출석하는 항공기 난동 피의자	인터넷신문
제2017-94호	인터넷 월요신문	2016년 12월 27일	사회일반	대한항공 기내난동 승객 첫 거부 조치, '블랙리스트' 확인	인터넷신문
제2017-95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2016년 12월 26일	사회	'비행기 난동男' 임○○씨, 경찰 출석... "제 잘못된 성향 바로잡고 올바르게 행동하겠다"	인터넷신문
제2017-96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6년 12월 27일	사회	대한항공, 사상 첫 기내 난동 승객 탑승거부	인터넷신문
제2017-97호	인터넷 일요주간	2016년 12월 26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아...죄송"	인터넷신문
제2017-98호	인터넷 중부일보	2016년 12월 28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 29일 구속 여부 결정...처벌 수위는?	인터넷신문
제2017-99호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2016년 12월 28일	사건 이슈	대한항공, 기내 난동 임씨 탑승 거부...같은 죄 조현아 씨는?	인터넷신문
제2017-100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7년 1월 2일	사회	침까지 맞으며 기내난동 진압한 대한항공 정비사 표창수여	인터넷신문
제2017-101호	조세금융신문	2016년 12월 27일	사회	임○○, '양주 만취의 결과...뒤늦은 후회'	인터넷신문
제2017-102호	프라이임경제	2016년 12월 27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진상고객에 강력대응	인터넷신문
제2017-103호	한경닷컴	2016년 12월 27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씨 탑승거절 조치... "최초 사례"	인터넷신문
제2017-104호	BBS NEWS	2016년 12월 25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 난동 30대 피의자 내일 오전 경찰 조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105호	e글로벌이코노믹	2016년 12월 26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	인터넷신문
제2017-106호	e머니에스	2017년 1월 4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검찰 송치... 마약 검사는 '음성'	인터넷신문
제2017-107호	e머니투데이	2016년 12월 30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씨 결국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7-108호	The PR	2016년 12월 28일	오피니언	[주간 핫브랜드] 땅콩회항 대한항공, 새 별명은 '기내난동'	인터넷신문
제2017-109호	THE300	2017년 1월 2일	정치	기내난동 진상고객 5년간 탑승금지...처벌규정 대폭 강화 추진	인터넷신문
제2017-110호	TV Daily	2016년 12월 27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탑승 거부 첫 사례...테이저건 적극 사용	인터넷신문

제2017-29호	연에스포츠파송
대상보도	연에스포츠파송 2016년 12월 29일자 사건/사고면 「기업 후계자들의 막장 난동 논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항공기 내 폭행사건 피의자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의자 부친의 성명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명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과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0호	주식회사 매일일보
대상보도	매일일보 2016년 12월 23일자 9면 「○○물산 사장 아들 ‘기내 난동’... 불매운동 확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항공기 내 폭행사건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의자 부친의 성명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명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과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3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0건)

- 게재순서는 의결번호순이 원칙이나 제2017-111호~제2017-129호의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하여 아래 목록에 포함함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31호	문화저널21	2016년 12월 27일	저널21	오너2세 기내난동...‘○○물산’ 직원들 “할 말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7-111호	아시아경제	2016년 12월 29일	18면	날개 잃은 대한항공	지역일간지
제2017-112호	아시아경제 닷컴	2016년 12월 29일	증권	날개 잃은 대한항공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113호	뉴스1코리아	2016년 12월 27일	산업일반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OO씨 영구 탑승거부 검토	뉴스통신
제2017-114호	녹색경제신문	2016년 12월 27일	항공/물류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OO씨에 탑승거부...영구 탑승거부도 검토	인터넷신문
제2017-115호	뉴시안	2016년 12월 28일	사회	'여객기 난동 사건' 위험천만...승무원·고객, 경각심 필요	인터넷신문
제2017-116호	동아닷컴	2016년 12월 27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OO씨 영구 탑승거부 검토	인터넷신문
제2017-117호	디오데오	2016년 12월 27일	IT/과학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OO씨 영구 탑승거부 검토	인터넷신문
제2017-118호	문화뉴스	2016년 12월 27일	사회	대한항공, 임OO 탑승 거부... 남성 승무원 확충 계획	인터넷신문
제2017-119호	비즈니스 포스트	2016년 12월 23일	기업정책	민병두 남인순, 항공기 내부난동 처벌강화법안 발의	인터넷신문
제2017-120호	업다운뉴스	2016년 12월 27일	사회	임OO, 상공이 무법지대도 아니고?	인터넷신문
제2017-121호	인터넷 매일일보	2016년 12월 22일	사회	OO물산 사장 아들 '기내 난동'...불매운동 확산	인터넷신문
제2017-122호	인터넷 미디어오늘	2016년 12월 28일	사회	동국제강 장남 술집난동 케이크값 30만원의 진실	인터넷신문
제2017-123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2016년 12월 28일	사회	재벌2세들의 난, OO물산 이어 동국제강도 주폭으로 입길	인터넷신문
제2017-124호	인터넷 이데일리	2016년 12월 27일	산업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OO 탑승거부 조치 결정	인터넷신문
제2017-125호	인터넷 일요시사	2016년 12월 29일	인물	'금수저의 국제망신' OO물산 임OO	인터넷신문
제2017-126호	인터넷 전자신문	2016년 12월 27일	핫이슈	'첫 사례'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OO씨에 승객 탑승거부 조치...영구 탑승거부도 검토	인터넷신문
제2017-127호	인터넷 토요경제	2016년 12월 27일	산업	폭행·갑질·난동...총수 일가 '천태만상'	인터넷신문
제2017-128호	컨슈머타임스	2017년 1월 4일	정치·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OO물산 임OO 씨, 검찰 송치	인터넷신문
제2017-129호	한강타임즈	2016년 12월 27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탑승거부 조치	인터넷신문

제2017-32호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대상보도	매일경제 2016년 12월 28일자 A18면 「기내난동 승객 대한항공 못탄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항공기 내 폭행사건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의자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명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과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3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6건)

- 게재순서는 의결번호순이 원칙이나 제2017-130호~제2017-164호의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하여 아래 목록에 포함함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33호	인터넷 신아일보	2016년 12월 26일	사회	경찰, '기내 난동' 피의자 소환... 마약 의혹 등 조사	인터넷신문
제2017-130호	국민일보	2016년 12월 31일	1면	'유전특권'... 가진 자들의 안하무인	중앙일간지
제2017-131호	머니투데이	2016년 12월 28일	12면	"기내난동자 탑승거부... 더 이상 자비 없다"	중앙일간지
제2017-132호	서울신문	2016년 12월 29일	20면	'갑질 오너가3세 배려는 사치인가'	중앙일간지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133호	헤럴드경제	2016년 12월 29일	13면	금수저들 잇단 '막장드라마' 왜?	중앙일간지
제2017-134호	신아일보	2017년 1월 10일	27면	또 다른 정유리들을 보며	지역일간지
제2017-135호	이투데이신문	2016년 12월 30일	5면	기내 만취난동 임○○씨 구속	지역일간지
제2017-136호	이투데이	2016년 12월 29일	사회	'대한항공 만취난동' 임○○ 씨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7-137호	일간경기	2016년 12월 27일	18면	'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기억나지 않는다"	지역일간지
제2017-138호	인터넷 일간경기	2016년 12월 29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탑승 거부 받아들인다"	인터넷신문
제2017-139호	금융소비자 뉴스	2017년 1월 4일	기업&재계	'기내난동' ○○물산 아들,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인터넷신문
제2017-140호	뉴스파인더	2016년 12월 27일	사건/사고	'대한항공 기내 난동' 30대...조현아와 같은 죄 적용	인터넷신문
제2017-141호	데일리 서울파이낸스	2016년 12월 27일	산업/재계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씨 '영구 탑승거부' 검토	인터넷신문
제2017-142호	데일리안	2016년 12월 26일	경제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씨, 27일 사전 구속영장	인터넷신문
제2017-143호	부신닷컴	2016년 12월 28일	사회	대한항공 테이저건 시연 공개... 누리꾼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	인터넷신문
제2017-144호	온라인 중앙일보	2016년 12월 26일	사회	경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에 내일(27일) 구속영장 신청	인터넷신문
제2017-145호	월드투데이	2016년 12월 26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물의 일으켜 죄송"	인터넷신문
제2017-146호	위키트리	2016년 12월 26일	사건사고	'기내난동' 피의자가 경찰 출석해서 한 말	인터넷신문
제2017-147호	이슈타임	2016년 12월 27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 만취 난동' 임○○씨 탑승거부 조치	인터넷신문
제2017-148호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2016년 12월 26일	속보	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기억나지 않아... 죄송"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149호	인터넷 공감신문	2016년 12월 26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 안나”	인터넷신문
제2017-150호	인터넷 금강일보	2016년 12월 26일	사회	‘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기억나지 않아·죄송”	인터넷신문
제2017-151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6년 12월 29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7-152호	인터넷 서울경제	2016년 12월 26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기억 안 나”	인터넷신문
제2017-153호	인터넷 선데이뉴스신문	2016년 12월 26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인터넷신문
제2017-154호	인터넷 울산매일	2016년 12월 26일	사회	‘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기억나지 않아·죄송”	인터넷신문
제2017-155호	인터넷 인천일보	2016년 12월 26일	사회	‘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기억나지 않아·죄송”	인터넷신문
제2017-156호	인터넷 주간현대	2016년 12월 27일	사회일반	테이저건 적극사용, 탑승거부…임○○이 만든 기내 문화	인터넷신문
제2017-157호	인터넷 중도일보	2016년 12월 23일	사회/교육	숨방망이 처벌에 기내 난동 되풀이…“외국은 중범죄자 취급”	인터넷신문
제2017-158호	인터넷 충청투데이	2016년 12월 23일	사회	숨방망이 처벌에 기내 난동 되풀이…“외국은 중범죄자 취급”	인터넷신문
제2017-159호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2016년 12월 27일	사회	임○○ ‘때 늦은 후회’ 조현아 동면상련	인터넷신문
제2017-160호	인터넷 투데이신문	2016년 12월 26일	사회	국내 글로벌 중소기업 오너 2세 기내난동…‘금수저 갑질 행위’ 논란	인터넷신문
제2017-161호	인터넷 팝콘뉴스	2016년 12월 28일	칼럼오피 니언	“내가 왕이다” 안하무인 금수저들의 과시 방법?	인터넷신문
제2017-162호	인터넷 한국스포츠키경제	2016년 12월 28일	사회/문화	대한항공 기내난동 탑승거부 ‘블랙리스트’ 작성…임○○ 씨에 ‘탑승 안돼’	인터넷신문
제2017-163호	조선닷컴	2016년 12월 26일	연예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경찰 출석… 미약투약 여부 확인 방침, 네티즌 “살인 미수도 적용해서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인터넷신문
제2017-164호	쿠키뉴스	2016년 12월 29일	사회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 사전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인터넷신문

제2017-34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고	위키프리 2016년 12월 23일자 사건사고면 「가죽 가방 만들기 위해」 산 채로 가죽 벗겨지는 악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악어를 산 채로 가죽 벗기는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5호	주식회사 국제뉴스
대상보고	국제뉴스 2016년 12월 7일자 라이프/헬스면 「독일식 암재활전문 클리닉, 전남 화순에 설립된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6호	주식회사 뉴시스헬스
대상보도	데일리뉴스인(뉴스 인) 2016년 12월 7일자 의료면 「○○○○ “추억 만드는 병원 될 것”」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7호	광남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광남일보 2016년 11월 24일자 자치면 「화순에 전국 최초 의료관광형 암재활치료센터 들어선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p>

	<p>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38호	주식회사 국제뉴스
대상보도	국제뉴스 2016년 12월 2일자 라이프/헬스면 「미래형치과 ○○○○○○치과 ○○의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9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뉴스통신
대상보도	KNS뉴스통신 2016년 12월 23일자 사회면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유발... 여성 한방 다이어트 전문요법으로 치료가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40호	주식회사 디트뉴스이십사
대상보도	디트news24 2016년 12월 1일자 디트메디면 「○○신경외과, ○○○○역 인근으로 확장이전 완료 및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p>

	<p>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41호	주식회사 경제풍월
대상보도	인터넷 경제풍월 2016년 11월 15일자 의학면 「디스크·척추질환·턱관절장애·교통사고후유증 ○○○○한의원 판교점 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42호	주식회사 경제풍월
대상보도	인터넷 경제풍월 2017년 1월 3일자 의학면 「○○○○한의원 ○○점 일요일 진료 실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43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1월 3일 시사면 「평창 ○○면 ○○○○○요양병원, 해발 700m 청정지대서 암 환자 회복 도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p>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44호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매일신문 2017년 1월 4일자 건강면 「[알고 찾는 요양병원] ○○요양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45호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대상보도	인터넷 충청투데이 2016년 11월 29일자 충북면 「“세상의 밝은 빛을 선물 ... 보다 더 밝은 세상 만드는 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수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46호	호남경제신문
대상보도	호남경제신문 2016년 12월 12일자 사회면 「광주 ○○치과, 임플란트 비용.시간 줄인 ‘캐드캠 시스템’ 구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p>

	<p>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게재순서는 의결번호순이 원칙이나 제2017-47호~제2017-164호는 앞에 게재된 시정권고 결정건과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하여 해당 건의 목록에 수록함. 동일건 및 해당 페이지는 아래 표 참조

안 건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건	페이지
제2017-47호~제2017-50호	제2017-25호	P67
제2017-51호~제2017-110호	제2017-27호	P68~72
제2017-111호~제2017-129호	제2017-30호	P73~74
제2017-130호~제2017-164호	제2017-32호	P75~77

제2017-165호	보건복지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보건복지신문 2017년 2월 5일자 종합뉴스면 「인천○○소방서, 작업 중 팔 절단 60대 근로자 긴급 후송」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소방서의 구조 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응급환자인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166호	주식회사 기업인뉴스	
대상보도	기업인뉴스 2017년 2월 2일자 사회면 「○○면 의용소방대, 주택화재복구 봉사활동 실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화재 사고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화재 피해자의 주소 및 주택 외관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16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167호	뉴스충청인	2017년 2월 2일	충남	부여군 ○○면 의용소방대, 주택화재복구 봉사활동 실시	인터넷뉴스
제2017-168호	대전일보닷컴	2017년 2월 2일	충남	부여 ○○면 의용소방대, 주택화재복구 봉사활동 실시	인터넷뉴스
제2017-169호	로컬투데이	2017년 2월 2일	충청남도	부여군 ○○면 의용소방대, ‘주택화재복구 봉사활동’ 실시	인터넷뉴스
제2017-170호	불교공뉴스	2017년 2월 2일	지역뉴스	○○면 의용소방대, 주택화재복구 봉사	인터넷뉴스
제2017-171호	서울일보닷컴	2017년 2월 2일	사회	부여○○면 의용소방대, 주택화재복구 봉사 앞장	인터넷뉴스
제2017-172호	인터넷 금강일보	2017년 2월 2일	지역 일간지	○○면 의용소방대, 주택화재복구 봉사활동 실시	인터넷뉴스
제2017-173호	인터넷 충청매일	2017년 2월 2일	사람들	부여 ○○면 의소대, 주택화재 복구 봉사	인터넷뉴스
제2017-174호	중부뉴스통신	2017년 2월 2일	전국	○○면 의용소방대, 주택화재복구 봉사활동 실시	인터넷뉴스
제2017-175호	피디언뉴스	2017년 2월 2일	전국	○○면 의용소방대, 주택화재복구 봉사활동 실시	인터넷뉴스

제2017-176호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2월 7일자 사회면 「기내난동 피해」 대한항공 승무원, 정신적 트라우마 호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항공기 내 폭행사건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의자 부친의 성명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명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과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177호	주식회사 고려일보
대상보도	시사뉴스 2017년 1월 23일자 26~27면 「안하무인 재벌家の ‘갑질·폭행’, 왜 ‘관리’되지 않을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항공기 내 폭행사건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p>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p> <p>또한 피의자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명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과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7-17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178호	인터넷 시사뉴스	2017년 1월 6일	사회	안하무인 재벌家の '갑질·폭행', 왜 '관리'되지 않을까?	인터넷뉴스
제2017-179호	여성경제	2017년 2월 1일	산업·ICT	기내난동 때 테이저건 안 쏘면 2억 과징금...실효성 논란	인터넷뉴스

제2017-180호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웍
대상보도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7년 2월 7일자 사회면 「기내난동 피해자」 대한항공 승무원 정신적 트라우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항공기 내 폭행사건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18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181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2월 7일	사회	“기내난동 피해 승무원들, 트라우마 심해 비행 어려운 상황”	인터넷뉴스
제2017-182호	한경닷컴	2017년 2월 7일	사회	“기내난동 피해 승무원, 정신적 트라우마 호소”	인터넷뉴스

제2017-183호	주식회사 일요시사
대상보도	일요시사 2016년 12월 19일자 44면 「초등교사 맞아? 여중생과 성매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삽화를 통해 범죄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184호	주식회사 일요시사
대상보도	인터넷 일요시사 2016년 12월 16일자 사회면 「초등교사 맞아? 여중생과 성매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삽화를 통해 범죄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185호	주식회사 일요시사
대상보도	인터넷 일요시사 2017년 1월 25일자 사회면 「여직원 가슴을… 손버릇 나쁜 사장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삽화를 통해 범죄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186호	주식회사 일요시사
대상보도	인터넷 일요시사 2017년 2월 1일자 사회면 「<충격세태> ‘남성이 왕’ 성노예 계약서 실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삽화를 통해 범죄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187호	교육산업신문
대상보도	교육산업신문 2017년 1월 30일자 뉴스면 「조○○ 씨 대통령 탄핵 무효 외치며 아파트 투신 숨겨」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와 유족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188호	굿데일리
대상보도	굿데일리 2017년 1월 30일자 사회면 「○○○ 유족, “정치적 이용 당하는 것 싫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을 공개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자와 유족 간의 갈등관계에 대해 적시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189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스포츠경향 2017년 1월 30일자 생활면 「○○○ “분향소 불허? 세월호 천막부터 철거하라” 박원순 시장에 항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을 공개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자와 유족 간의 갈등관계에 대해 적시하여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190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일요서울 2017년 2월 6일자 16면 「애국텐트는 세월호텐트와 같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19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191호	일요서울	2017년 1월 30일	사회	서울시, 분향소 설치 안된다 '갈등 고조'	인터넷뉴스
제2017-192호	뉴데일리	2017년 1월 29일	사회	○○○ 회원 투신 사망, ○○○ 긴급성명 “극단적 선택 자제 당부”	인터넷뉴스
제2017-193호	뉴스타운	2017년 1월 29일	사회/환경	○○○ 성명서, 우리는 고 조○○ 애국동지의 고귀한 뜻은 이어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뉴스
제2017-194호	업코리아	2017년 1월 30일	사회	○○○ ○○○, 투신 남성에 대한 긴급 성명서 발표	인터넷뉴스
제2017-195호	올인코리아	2017년 1월 29일	사회	설날 탄핵반대 태극기 흔들며 투신자살?	인터넷뉴스

제2017-196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1월 24일자 시사면 「칭얼댄다고 갓난아기 학대한 아빠...비난 봇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갓난아기를 학대하는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197호	주식회사 뉴스메이커
대상보도	인터넷 뉴스메이커 2017년 1월 3일자 IT과학·의학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할겠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198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7년 2월 2일자 의료면 「최대 통증네트워크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2월 6일 부산 해운대점 신규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제2017-199호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대상보도	일요신문 2017년 2월 12일자 43면 「“상속재산 손실 이모보다 많았을 것”」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관련 인물인 장시호의 확인되지 않은 파혼 경위와 병력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일지라도, 그의 파혼 경위와 병력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이에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19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00호	일요신문	2017년 2월 4일	사회	[단독] 장시호 파혼남 “상속재산 손실 이모보다 많았을 것”	인터넷뉴스
제2017-201호	인터넷 비즈한국	2017년 2월 3일	이슈	[단독] 장시호 파혼남 “상속재산 손실 이모보다 많았을 것”	인터넷뉴스

제2017-202호	미디어 실크에이치제이
대상보도	인터넷 미디어워치 2017년 2월 8일자 플라스틱워치면 「[단독] 손석희 서민 코스프레의 종말...부춘1번지 ○○동 거주 확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기사는 JTBC 방송사 사장의 주택 주소와 사진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언론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주택 주소와 사진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p> <p>이에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203호	미디어 실크에이치제이
대상 보도	인터넷 미디어워치 2017년 2월 12일자 플라스틱워치면 「[포토] 손석희 씨가 MBC 평의원 시절 구매한 ○○동 호화 저택」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 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기사는 JTBC 방송사 사장의 주택 주소와 사진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언론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주택 주소와 사진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p> <p>이에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204호	주식회사 국제뉴스
대상 보도	국제뉴스 2017년 2월 11일자 전국면 「태블릿PC진상위, “조작보도, 초호화주택 구입자금” 기자회견!」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JTBC 방송사 사장의 주택 주소를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언론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주택 주소를 상세히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이에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05호	주식회사 미래한국미디어
대상보도	인터넷 미래한국 2017년 2월 23일자 라이트뉴스면 「애국단체들 주말(18일) JTBC 손석희 사장 자택 앞 대규모 집회 예고 “경찰, 손석희 사장 신변 보호해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JTBC 방송사 사장의 주택 주소를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언론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주택 주소를 상세히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이에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06호	로컬투데이
대상보도	로컬투데이 2017년 2월 27일자 아산면 「아산소방서, 교통사고 요구조사 긴급 구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소방서의 구조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초상 및 성, 나이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20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07호	인터넷 중부매일	2017년 2월 27일	충남	아산소방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요구조사 긴급 구조	인터넷뉴스
제2017-208호	i온양신문	2017년 2월 28일	사회경제	26일 ○○에서 교통사고, 6대 여성 구조	인터넷뉴스

제2017-209호	종합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2017년 3월 8일자 지역종합면 「한 경찰관의 작은 선행, 우리 사회 어두운 곳 밝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경찰관의 구조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주택 상세 주소 및 성, 나이 등 신원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10호	주식회사 시사데일리
대상보도	인터넷 시사뉴스 2017년 3월 9일자 사회면 「고속도로 갓길 배회 할머니 구한 경찰관 미담 화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경찰관의 구조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주택 상세 주소 및 성, 나이 등 신원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11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국민일보 2017년 3월 6일자 12면 「한국서 실종 대만 여대생 찾고보니... 보이스포싱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실종사건 수사 결과, 실종이 아닌 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의 초상 및 성명, 나이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21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12호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3월 6일	시사	한국서 실종 대만 여대생 찾고보니... 보이스피싱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	인터넷뉴스
제2017-213호	포커스뉴스	2017년 3월 5일	사회	한국서 행방불명 대만여성, 교도소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	뉴스통신
제2017-214호	굿데일리	2017년 3월 5일	사회	대만 여대생 실종, 부모 속 애통하게 하더니!	인터넷뉴스
제2017-215호	뉴스타운	2017년 3월 5일	사회/환경	실종된 타이완 여대생, 의정부에서 발견 "가족과 조국엔 알리지 말아 달라"	인터넷뉴스
제2017-216호	미디어펜	2017년 3월 5일	사회	한국서 실종 된 대만 여대생 의정부 교도소 수감	인터넷뉴스
제2017-217호	위키트리	2017년 3월 4일	사건사고	한국에 워킹홀리데이 온 대만 여대생 2명 실종	인터넷뉴스
제2017-218호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3월 6일	사회	실종 타이완 여대생, 의정부 교도소 수감 중...'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인터넷뉴스

제2017-219호	주식회사 문화뉴스
대상보도	문화뉴스 2017년 3월 5일자 국제면 「실종된 줄 알았던 '대만 여대생', 알고 보니 범죄 혐의로 구속 수감 중」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실종사건 수사 결과, 실종이 아닌 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의 초상 및 성, 나이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21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20호	스타서울TV	2017년 3월 5일	사회	실종 타이완 여대생, 위홀 입국해 보이스피싱...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감 중	인터넷뉴스
제2017-221호	인터넷 선데이뉴스 신문	2017년 3월 5일	사회	실종된 대만 여대생, “보이스피싱 연루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	인터넷뉴스
제2017-222호	쿠키뉴스	2017년 3월 5일	사회	실종 대만 여대생, 보이스 피싱으로 구속 중	인터넷뉴스

제2017-223호	주식회사 한경닷컴
대상보도	한경닷컴 2017년 3월 5일자 사회면 「‘납치 의혹’ 실종 타이완 여대생...의정부 교도소서 발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실종사건 수사 결과, 실종이 아닌 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24호	주식회사 뉴스플러스
대상보도	뉴스플러스 2017년 3월 9일자 정치/행정면 「<단독-1보>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확정, 대통령 파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보도 윤리)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중대한 사회적 관심사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심판 결과를 단정하여 허위 보도하였다. 이는 탄핵 심판이 임박한 시기에 독자들의 판단에 큰 혼란을 야기해 사회 질서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22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25호	뉴스플러스	2017년 3월 9일	정치/행정	[단독-2보] 현재, 박근혜 탄핵 확정, 대통령 파면 7 대 1 인용	인터넷뉴스
제2017-226호	뉴스플러스	2017년 3월 9일	정치/행정	[단독-3보] 현재 대통령 탄핵결정, 평의 격론 끝	인터넷뉴스

제2017-227호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2월 20일자 사회면 「여친 부모 살해범 신상 공개…SNS서 논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범죄사건에 관한 SNS 게시글을 그대로 노출하고,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22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28호	인사이트	2017년 2월 21일	사회	여친 부모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성폭행' 한 남성 신상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229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2017년 2월 21일	사회	'대구 살인사건' 여자친구 부모 살해범 신상 공개... SNS서 확산	인터넷뉴스
제2017-230호	조선닷컴	2017년 2월 20일	사건/사고	'여자친구 부모 잔혹 살해범' 신상 공개...SNS 파문 확산	인터넷뉴스

제2017-231호	주식회사 미디어인그램
대상보도	놀이미디어 오펜 2017년 2월 28일자 월드뉴스면 「남친의 이별 통보에 여자는 남친의 다리에 '이것'을 주입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운을 사용한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32호	주식회사 문화뉴스
대상보도	문화뉴스 2017년 2월 28일자 국제면 「남친의 이별 통보에 여자는 남친의 다리에 '이것'을 주입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운을 사용한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p>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233호	주식회사 민중의소리
대상보도	민중의소리 2017년 3월 9일자 사회면 「○○경찰청 소속 경찰관, 스스로 목숨 끊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기사는 자살자의 직업과 직위, 소속부서, 근무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234호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대상보도	오마이뉴스 2017년 3월 9일자 사회면 「○○경찰청 소속 경찰관, 본가 창고에서 번사체로 발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기사는 자살자의 직업과 직위, 소속부서, 근무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235호	주식회사 공공미디어	
대상보도	공공뉴스 2017년 3월 8일자 경제면 「○○엔지니어링 직원 ○○ 사옥서 투신 사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 나이, 근무지, 직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자살자의 유서내용을 적시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23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36호	금융소비자 뉴스	2017년 3월 8일	기업&재계	○○엔지니어링 직원, 사옥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237호	세계닷컴	2017년 3월 8일	사회	○○엔지니어링 직원 ○○ 사옥서 투신 사망	인터넷뉴스
제2017-238호	시사포커스 신문	2017년 3월 8일	경제	○○엔지니어링 직원, 사옥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239호	인터넷 아시아일보	2017년 3월 8일	사회	○○엔지니어링 직원, 사옥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240호	인터넷 투데이신문	2017년 3월 8일	사회	○○엔지니어링 사옥서 40대 직원 투신해 사망	인터넷뉴스

제2017-241호	주식회사 미디어인그램	
대상보도	놀이미디어 오픈 2017년 2월 24일자 월드뉴스면 「달걀 못 낳는 ‘수컷’ 병아리들이 맞이하는 운명」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병아리가 분쇄기에 산 채로 갈리는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42호	주식회사 문화뉴스
대상보도	문화뉴스 2017년 2월 24일자 국제면 「달걀 못 낳는 ‘수컷’ 병아리들이 맞이하는 운명」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병아리가 분쇄기에 산 채로 갈리는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43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7년 2월 10일자 국제면 「여성 방화 용의자 찾아낸 주민들, 머리채 잡고 불구덩이로 밀어넣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군중에 의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져 전신화상을 입은 여성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44호	주식회사 한국콘텐츠네트워크
대상보도	포스트쉐어 「경찰서에 있는 방화범 끌어내 화염 속으로 던져버린 주민들 (사진 4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군중에 의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져 전신화상을 입은 여성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45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국민일보 2017년 3월 14일자 18면 「‘코나무’ 유근피 주재료로 비염·아토피 한방에 해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246호	주식회사 국민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3월 13일자 시사면 「[명의&인의를 찾아서-(104) 아토피·비염 특화 ○○한의원]‘코나무’ 유근피 주재료로 한방에 해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247호	주식회사 경상일보
대상보도	경상일보 2017년 2월 20일자 14면 「○○○재활요양병원 개원... 인공지능형 재활로봇 도입」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p>

	<p>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248호	주식회사 경상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경상일보 2017년 2월 19일자 문화면 「○○○재활요양병원 개원... 인공지능형 재활로봇 도입」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249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7년 3월 2일자 의료면 「○○마취통증의학과 하남○○점 오는 8일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250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
대상보도	KNS뉴스통신 2017년 3월 6일자 경기면 「비수술적 통증치료 전문, ○○마취통증의학과 ○○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p>

	<p>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251호	인터넷 경향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2017년 3월 16일자 건강·의학면 「인천 남구 건강 지킴이 ‘우뚝’ 개원 1주년 ○○○○○○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수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252호	주식회사 시사뉴스피플
대상보도	인터넷 시사뉴스피플 2017년 3월 6일자 건강면 「○○요양병원 보건복지부 인정의료기관...환자를 위한 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253호	주식회사 채널에이
대상보도	채널A 2017년 2월 21일자 23:13 <외부자들> 프로그램 「외부자들 제9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방송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명예훼손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법를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동흡 변호사의 전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를 희화화한 별명을 공개하였다.</p> <p>이는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일지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제21조제4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25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54호	뉴스엔	2017년 2월 21일	사회	이동흡부터 서○○까지, '외부자들' 웃게 한 대통령 대리인단(종합)	인터넷뉴스
제2017-255호	오마이뉴스	2017년 2월 13일	사회	김진태에게 질타 받던 '흡사마', 박 대통령 돕는다	인터넷뉴스
제2017-256호	인터넷 경향신문	2017년 2월 13일	사회	[기타뉴스] [알고보니] '낙마한 현재소장' 에서 '박근혜 대리인'으로...돌아온 이동흡	인터넷뉴스

제2017-257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대상보도	SBS-TV 2017년 3월 15일자 20:00 <8시 뉴스> 프로그램 「[단독] 靑 실세-친박 단체-전경련, 수상한 통화 '포착'」 제하의 보도 「[사실은] 靑 정보 입수 의혹... 탄핵 국면엔 연락 안했다?」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3월 16일자 20:00 <8시 뉴스> 프로그램 「[사실은] '관제데모' 당시에도 긴밀히 연락...배후 실체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방송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보도는 청와대가 특정 시민단체의 관제시위 등에 관여하고 이들 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청와대 행정관과 특정 시민단체 관계자 간의 통화 횡수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공개하였다. 언론이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및 제13조의5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25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58호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3월 15일	사회	[단독] ○○○○ 대표, 지난해 전경련 간부와 40여회 연락	인터넷뉴스
제2017-259호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3월 16일	시사	청와대 허○○ “○○○○ 주○○과 지난해 90차례 통화했다”	인터넷뉴스
제2017-260호	한겨레	2017년 3월 7일	27면	[한겨레사설] ‘박근혜청와대’가 백색테러 위험도 사주했다	중앙일간지
제2017-261호	인터넷 한겨레	2017년 3월 6일	사설/칼럼	[한겨레 사설] ‘박근혜 청와대’가 백색테러 위험도 사주했다	인터넷뉴스
제2017-262호	인터넷 시사저널	2017년 3월 13일	정치	검찰 특수본 시즌2 ‘국정 농단’ 제대로 파헤칠까	인터넷뉴스
제2017-263호	오마이뉴스	2017년 3월 8일	미디어	‘북미사일: 특검결과’ 보도량 KBS 8:3, MBC 10:2	인터넷뉴스
제2017-264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7년 3월 17일	정치/사회	주○○·장○○ 등 친박단체 수사 속도전 ‘박영수 특검, 몽둥이 맛 봐야’	인터넷뉴스
제2017-265호	소버라이프	2017년 3월 17일	뉴스	‘○○○○’ 주○○ 대표, 청와대 행정관과 90여차례 통화 의혹 불거져	인터넷뉴스
제2017-266호	노컷뉴스	2017년 3월 7일	정치	[Why뉴스] 특검은 왜 화이트리스트까지 파헤쳤나?	인터넷뉴스
제2017-267호	문화저널21	2017년 3월 6일	정치일반	靑, 친박 단체와 교류…‘과격시위’ 지시 내렸나	인터넷뉴스
제2017-268호	뷰스앤뉴스	2017년 3월 16일	정치	靑행정관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 요청이 무슨 범죄냐”	인터넷뉴스
제2017-269호	시사뉴스	2017년 3월 16일	정치	청와대 허○○, 지난해 ○○○○와 90차례 통화	인터넷뉴스
제2017-270호	인터넷 스페셜경제	2017년 3월 16일	사회일반	[靑 관제데모 동원 의혹]○○○○ 대표, 청와대·전경련 수사 접촉 “무슨 말 오겠나?”	인터넷뉴스
제2017-271호	한국일보	2017년 3월 6일	1면, 5면	[단독] 靑, 태극기집회 초반에도 친박단체와 수시로 통화	중앙일간지
제2017-272호	헤럴드경제	2017년 3월 6일	12면	‘국정농단’ 특검 수사 중에 청와대, 친박단체와 접촉	중앙일간지
제2017-273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7년 3월 6일	사회	‘국정농단’ 특검 수사 중에 청와대, 친박단체와 접촉	인터넷뉴스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74호	JTBC	2017년 3월 6일	JTBC 뉴스룸	허○○ 행정관, 선거·수사 때마다 친박단체와 집중통화	방송
제2017-275호	연합뉴스	2017년 3월 6일	정치	“靑, ‘국정농단’ 檢·특검 수사 때 친박단체와 접촉”	뉴스통신
제2017-276호	국회뉴스	2017년 3월 6일	사회	“靑, ‘국정농단’ 檢·특검 수사 때 친박단체와 접촉”	인터넷뉴스
제2017-277호	노컷뉴스	2017년 3월 6일	사회	靑, ‘국정농단’ 수사 때 친박단체와 수시로 접촉	인터넷뉴스
제2017-278호	매경닷컴	2017년 3월 6일	정치	“청와대, ‘국정농단’ 수사 때 친박단체와 접촉”	인터넷뉴스
제2017-279호	부산닷컴	2017년 3월 8일	사회	허○○ 행정관, ○○○○ 대표 등 90차례 연락 주고 받아…	인터넷뉴스
제2017-280호	인사이트	2017년 3월 19일	사회	‘○○○○’ 주○○ 대표의 역대 막말 발언 67지	인터넷뉴스
제2017-281호	인터넷 경상일보	2017년 3월 6일	정치	“靑, 檢·특검 수사 때 친박단체와 접촉”	인터넷뉴스
제2017-282호	인터넷 대구신문	2017년 3월 7일	사회	“靑, 국정농단 수사 때 친박단체와 수시로 접촉”	인터넷뉴스
제2017-283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7년 3월 6일	사회	“청와대, ‘국정농단’ 檢·특검 수사 때 친박단체와 접촉”	인터넷뉴스
제2017-284호	인터넷 중도일보	2017년 3월 6일	사회	“靑, ‘국정농단’ 檢·특검 수사 때 친박단체와 접촉”	인터넷뉴스
제2017-285호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2017년 3월 18일	이슈	‘○○○○’ 주○○, 靑 참모·전경련 간부와 130번 연락, 조사 받나	인터넷뉴스
제2017-286호	일오신문	2017년 3월 17일	사회	성조기는 대체 왜? 친박단체 24시 따라가보니…	인터넷뉴스
제2017-287호	쿠키뉴스	2017년 3월 17일	정치	주○○ ○○○○ 대표, 靑 참모진과 90차례 연락… “조사 받을까”	인터넷뉴스
제2017-288호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3월 6일	사회	허○○ 행정관, 선거·수사 때마다 친박단체와 집중통화	인터넷뉴스
제2017-289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7년 3월 6일	정치	허○○ 행정관, 선거·수사 때마다 친박단체와 집중통화	인터넷뉴스
제2017-290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2017년 3월 7일	시사	특검 “허○○ 행정관, 장○○·주○○과 지주 연락”	인터넷뉴스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291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2017년 3월 16일	정치	○○○○가 ‘박근혜 퇴거’를 청와대 출입기자보다 먼저 알았던 까닭	인터넷뉴스
제2017-292호	노컷뉴스	2017년 3월 7일	정치	[조간 브리핑] 최순실이 삼성에 펄쩍 뛴 이유는?	인터넷뉴스
제2017-293호	고발뉴스닷컴	2017년 3월 6일	사회	靑, 친박단체 ‘탄핵반대·특검수사반대’ 시위 개입했나	인터넷뉴스
제2017-294호	시사뷰타임즈	2017년 3월 8일	뉴스	친박단체들, 왜 기세등등 한가 했더니...靑과 통화하며 시위	인터넷뉴스
제2017-295호	시사포커스 신문	2017년 3월 6일	사회	“박영수 목 날려야” 야구방망이 집회한 친박단체 고발당해	인터넷뉴스
제2017-296호	시사플러스	2017년 3월 6일	헤드라인 뉴스	靑, 태극기집회 친박단체와 수시로 통화...시위 주도?	인터넷뉴스
제2017-297호	아시아경제 닷컴	2017년 3월 17일	사회	주○○ ○○○○ 대표, 靑 참모와 연락 주고 받아 곧 경찰조사...장○○ ○○○○○○ 대표는 입건	인터넷뉴스
제2017-298호	이타임즈	2017년 3월 6일	정치	[맥모닝 뉴스]中 사드보복에 수출·내수 타격, 靑 ‘태극기 집회 친박단체’와 수시 통화 外	인터넷뉴스
제2017-299호	인터넷 미디어오늘	2017년 3월 6일	사회	탄핵반대 집회, 지독한 관제데모 낚새	인터넷뉴스
제2017-300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3월 6일	사회	청와대, ‘탄핵반대’ 친박단체와 수시로 통화...‘관제데모’ 의혹	인터넷뉴스
제2017-301호	인터넷 시사저널	2017년 3월 6일	이슈	[Today] 현재가 선택할 3월9일~13일 사이의 단 하루	인터넷뉴스
제2017-302호	인터넷 이데일리	2017년 3월 6일	이슈	[맥모닝 뉴스]中 사드보복에 수출·내수 타격, 靑 ‘태극기 집회 친박단체’와 수시 통화 外	인터넷뉴스
제2017-303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7년 3월 6일	사회	靑, 촛불 뒤엎을 시나리오?...“친박단체와 수십차례 통화”	인터넷뉴스
제2017-304호	쿠키뉴스	2017년 3월 6일	정치	靑, 국정농단 이후에도 관제데모 의혹...“주○○과 90차례 연락”	인터넷뉴스

제2017-305호	강원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강원신문 2017년 3월 22일자 지역면 「원주소방서, 승강기 사이에 목이 낀 40대男 구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소방서의 구조 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응급환자인 피구조자의 초상 및 성, 나이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06호	주식회사 투데이안
대상보도	투데이안 2017년 4월 19일자 사회면 「무진장소방서, 봄철 무리한 산행 사고지름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소방서의 구조 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응급환자인 피구조자의 초상 및 성, 나이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07호	주식회사 뉴스타운
대상보도	뉴스타운 2017년 4월 24일자 문화/연예면 「정○○과 결별한 ○○, 친아버지 때문? “신도들에 딸 판 샘, 사기로 구속기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연예인의 부친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해당 연예인의 이름을 공개하였다. 비록 연예인일지라도 그의 이름을 공개하여 가족의 범죄 혐의에 대해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연예인 부친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과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30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308호	인터넷 한라일보	2017년 4월 24일	뉴스	‘정○○과 결별’ ○○, 친아버지 영향? “신도들에 딸 팔아 구속기소” 안타까움	인터넷신문
제2017-309호	조선닷컴	2017년 4월 24일	연예	○○·정○○ 커플 결별 이유, ○○의 목사 아버지 때문?	인터넷신문

제2017-310호	주식회사 일요시사
대상보도	일요시사 2017년 4월 30일자 41면 「문 닫을 때 됐나… 판결도 50% 할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범죄 가해자의 법적 형량에 관해 보도하면서 자료 사진을 통해 범죄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11호	주식회사 일요시사
대상보도	인터넷 일요시사 2017년 5월 2일자 사회면 「<와글와글NET세상> 섬마을 윤간범들 ‘설왕설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범죄 가해자의 법적 형량에 관해 보도하면서 자료 사진을 통해 범죄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12호	주식회사 이앤씨네트웍스
대상보도	데일리차이나 2017년 2월 21일자 PEOPLE면 「산시 공무원의 막장 드라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 관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현저히 노골적으로 묘사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13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상보도	동아일보 2017년 4월 26일자 A14면 「정규직 고민하다 투신한 인턴... 고향가다 목숨 끊은 고시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충분치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 미수자의 나이, 장애 유형 및 정도, 근무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충분치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 미수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31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314호	동아닷컴	2017년 4월 26일	사회	정규직 고민하다 투신한 인턴... 고향가다 목숨 끊은 공시생	인터넷신문
제2017-315호	뉴스스	2017년 4월 25일	사회	○○도청서 추락한 ○○대 인턴, 평소 취업 스트레스	뉴스통신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316호	연합뉴스	2017년 4월 25일	전국	○○도청 4층서 추락한 청년인턴, 공공기관 4곳서도 인턴 전전	뉴스통신
제2017-317호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4월 25일	시사	장애인의무고용의 그림자, ○○도청 ○○세 인턴 “6월 인턴 계약 끝나면 어쩌나” 경찰조사결과와 스트레스 확인	인터넷신문

제2017-318호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상보도	중앙일보 2017년 4월 26일자 16면 「'4개월 인턴' 도돌이 지쳤나, 장애인 청년 안타까운 선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충분치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 미수자의 나이, 장애 유형, 근무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충분치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 미수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31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319호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4월 26일	사회	‘4개월 인턴’ 도돌이 지쳤나, 장애인 청년 안타까운 선택	인터넷신문
제2017-320호	OBC 더원방송	2017년 4월 25일	사회	○○도청 청년인턴 투신 의식 불명	인터넷신문
제2017-321호	경인일보	2017년 4월 26일	23면	‘미래없는 청년인턴’ 단기알바 다들 것 없다	지역일간지
제2017-322호	인터넷 경인일보	2017년 4월 26일	경제	‘미래없는 청년인턴’ 단기알바 다들 것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7-323호	주식회사 스포츠조선
대상보도	스포츠조선 2017년 5월 9일자 10면 「'남편 사망' 소식 들은 성○○ “이혼소송 준비 중에 비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와 유족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자살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적시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32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324호	스포츠조선 닷컴	2017년 5월 9일	연예	[공식] 성○○ 측 “오늘 남편 사망… 이혼소송 준비 중이었다”	인터넷신문
제2017-325호	매경닷컴	2017년 5월 9일	스타투데이 이 뉴스	성○○ 측 “별거 중이던 남편 사망 소식 접해…안타깝다”	인터넷신문
제2017-326호	세계닷컴	2017년 5월 9일	연예	성○○ 측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 중… 애도하는 마음”	인터넷신문
제2017-327호	e글로벌 이코노믹	2017년 5월 9일	사회	성○○ 남편, 수배중 숨진채 발견… 경찰 ‘자살 추정’	인터넷신문
제2017-328호	티비리포트	2017년 5월 9일	엔터	성○○ 남편, 숨진 채 발견… 자살 가능성 높아	인터넷신문

제2017-329호	주식회사 이슈데일리
대상보고	이슈데일리 2017년 5월 9일자 스타&화제면 「성○○ 남편, 차 안에서 번사체로 발견... ‘자살 추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와 유족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30호	주식회사 국제신문
대상보고	인터넷 국제신문 2017년 5월 9일자 문화면 「성○○ 남편 최○○ 씨, 숨진 채 발견 ... 1년 반 전부터 별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와 유족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31호	주식회사 문화뉴스
대상보도	문화뉴스 2017년 3월 22일자 국제면 「“영국에서만 8명 사망” 인도네시아 10대들이 목숨 건 ‘기절 게임’의 정체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 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심장이나 기도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초킹게임’을 하는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가학적인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32호	주식회사 인천일보
대상보도	인천일보 2017년 3월 28일자 19면 「어린이집 한 살배기 전신 화상 수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뜨거운 물로 전신 화상을 입은 아동의 피해 상태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어린 아이가 겪은 사고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33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333호	인터넷 인천일보	2017년 3월 28일	사회	어린이집 한살배기 전신 화상 수사	인터넷신문
제2017-334호	뉴시스	2017년 3월 27일	사회	시흥 어린이집서 커피포트 뜨거운 물에 생후 12개월 원생 화상	뉴스통신
제2017-335호	연합뉴스	2017년 3월 27일	사회	커피포트 물에 한살배기 온몸 화상... 부주의 어린이집교사 책임은	뉴스통신
제2017-336호	동아닷컴	2017년 3월 27일	사회	시흥 어린이집서 커피포트 뜨거운 물에 생후 12개월 원생 화상	인터넷신문
제2017-337호	아시아투데이 이닷컴	2017년 3월 27일	사회	시흥 어린이집 화상 사고, 커피포트 뜨거운 물에 한 살배기 온몸 화상	인터넷신문
제2017-338호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3월 27일	사회	시흥 어린이집서 커피포트 뜨거운 물에 생후 12개월 원생 화상	인터넷신문
제2017-339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7년 3월 27일	사회	어린이집서 커피포트 물에 한 살배기 온몸 화상...검찰 수사	인터넷신문
제2017-340호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3월 27일	사회	시흥 어린이집서 한 살배기 원생 화상... 현재 수사 진행 중	인터넷신문
제2017-341호	인터넷 울산매일	2017년 3월 28일	포토	어린이집서 커피포트 물에 한 살배기 온몸 화상	인터넷신문
제2017-342호	인터넷 중도일보	2017년 3월 27일	포토뉴스	커피포트 물에 온몸 화상	인터넷신문
제2017-343호	인터넷 투데이신문	2017년 3월 27일	사회	어린이집서 커피포트 물에 생후 12개월 아기 전신 2도 화상 입어	인터넷신문
제2017-344호	TV Daily	2017년 3월 27일	문화/사회	시흥 어린이집, 생후 12개월 영아 커피포트 쓰러져 화상	인터넷신문

제2017-345호	주식회사 뉴미디어
대상보도	이슈타임 2017년 3월 28일자 펫이슈면 「엘리베이터서 무차별 발길질에 피 토하는 강아지(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강아지를 확대하는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46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3월 30일자 시사면 「엘리베이터서 강아지 확대한 중국 남성에 누리꾼 공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강아지를 확대하는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47호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3월 17일자 사회면 「4년 전처럼 불에 탄 고양이 발견...제보자에 현상금 500만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고양이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348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 보도	조선일보 2017년 3월 28일자 메디컬리포트 D7면 「진단 어려운 옆구리디스크, 내시경 보며 레이저로 통증 잡는다」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49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상 보도	조선닷컴 2017년 3월 28일자 의료·보건면 「진단 어려운 옆구리디스크, 내시경 보며 레이저로 통증 잡는다」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p>

	<p>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350호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대상보도	광주일보 2017년 4월 3일자 10면 「강남 못지않은 지방흡입술 ... ‘○ ○의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51호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대상보고	인터넷 광주일보 2017년 4월 3일 기획면 「강남 못지않은 지방흡입술 ... ‘○ ○○의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52호	대경일보 주식회사
대상보고	대경일보 2017년 4월 13일자 14면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365일 24시 간병 요양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p>

	<p>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353호	대경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대경일보 2017년 4월 12일 기획특집면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54호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상보도	대구일보 2017년 4월 6일 19면 「‘사상체질’ 기반으로 진단·치료 눈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55호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대구일보 2017년 4월 5일 특집면 「○○○○○○한의원, ‘사상체질’ 기반으로 진단·치료 눈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p>

	<p>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356호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상보도	대구일보 2017년 4월 6일 20면 「관절·척추부터 내과질환까지 ‘원스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57호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대구일보 2017년 4월 5일 특집면 「○○○병원, 관절·척추부터 내과질환까지 ‘원스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58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일보 2017년 3월 22일 41면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안성형·백내장·시력 교정 전문 진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p>

	<p>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359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p>부산닷컴 2017년 3월 21일 라이프면</p> <p>「[○○○○○안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안성형·백내장·시력 교정 전문 진료」 제하의 보도</p>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60호	주식회사 전남일보
대상보도	전남일보 2017년 4월 27일 11면 「○○○○요양병원 개소 본격 진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61호	주식회사 전남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전남일보 2017년 4월 27일 주말&면 「○○○○요양병원 개소 본격 진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362호	서울시의사회
대상보도	디지털의사신문 2017년 4월 19일 의료뉴스면 「○○○ 강남○○○○안과, ‘프리미엄 스마일 센터’로 선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36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363호	메디파나뉴스	2017년 4월 19일	메디시안	강남○○○○안과, 안과 최초 '프리미엄 스마일 센터' 선정	인터넷신문
제2017-364호	메디팜헬스	2017년 4월 19일	의료·병원	○○○ 강남○○○○안과, 국내 안과 최초 '프리미엄 스마일 센터'로 선정	인터넷신문

제2017-365호	주식회사 문화뉴스
대상보도	문화뉴스 2017년 4월 20일자 뉴스면 「아토피 치료병원 ○○한의원 인천점, 확장 이전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66호	금강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금강일보 2017년 4월 13일자 경제면 「○○한의원 인천점, 4월 18일 확장·이전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67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중도일보 2017년 3월 26일자 지역면 「천안 ○○○여성병원 개원, “책임 진료 앞장설 것”」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p>

	<p>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368호	주식회사 충청일보재단
대상보도	인터넷 충청일보 2017년 3월 28일자 충남면 「천안 ○○○여성병원 개원 “책임 진료 앞장설 것”」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69호	주식회사 디트뉴스이십사
대상보도	디트news24 2017년 1월 26일자 디트메디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치아교정 우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70호	주식회사 뉴스토마토
대상보도	인터넷 뉴스토마토 2017년 5월 9일자 사회면 「○○치과병원, 36년 임상경력의 정○○ 원장이 맞춤형 임플란트 시술 제공」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p>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기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371호	주식회사 디트뉴스이십사
대상보도	디트news24 2017년 3월 17일자 디트메디면 「개원 3주년 ○○요양병원, '3무5유' 비전 선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기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72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닷컴 2017년 3월 21일자 라이프면 「[온천 ○○○ 요양병원] 환자의 생명에 최우선 가치 안전 강화한 '노인전문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73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5월 2일자 시사면 「여성비뇨기 특화 '○○○○비뇨기과' 확장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374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3월 10일자 기획·연재면 「피부과전문의 그룹 ○○○○○피부과, 인천 ○○○○도시에 10번째 지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 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p> <p>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p> <p>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375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 통신
대상보도	KNS뉴스통신 2017년 6월 6일자 연예/스포츠면 「‘핫이슈’ ○○, 어머니가 가수가 아닌 법조인 되길 원하셔...“뺨을 맞은 적도 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연예인의 부친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해당 연예인의 이름을 공개하였다. 비록 연예인일지라도 그의 이름을 공개하여 가족의 범죄 혐의에 대해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연예인 부친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과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37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376호	데일리굿뉴스	2017년 6월 6일	연예	○○○○ ○○ 父, 신도에게 200억 사기 친 목사	인터넷신문
제2017-377호	미디어펜	2017년 6월 6일	연예/스포츠	○○ 父, 설교 영상 확인하니... “백만 원 현금했다 생각해라”	인터넷신문
제2017-378호	민중의소리	2017년 6월 9일	사회	○○ 아버지, 200억 사기사건?... 설교 영상 살펴보니? ‘경악’	인터넷신문
제2017-379호	스타서울TV	2017년 6월 5일	연예	○○ 아버지, 교인들에게 200억 사기...“투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것”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380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2017년 6월 6일	연예·스포츠	‘풍문쇼’ ○○ 아버지 박○○ 목사, 신도 포섭 투자사기단까지 운영	인터넷신문
제2017-381호	인사이트	2017년 6월 6일	연예	딸 ○○ 이용해 신도들에게 200억원 뜯어낸 박○○ 목사	인터넷신문
제2017-382호	인터넷 금강일보	2017년 6월 6일	문화	○○, 안타까운 마음에 발 구르며 이미지 타격...	인터넷신문
제2017-383호	인터넷 기호일보	2017년 6월 6일	레저/연예	○○, ‘명상’에 고스란히 타격 입어 ... 안타까워 발동동	인터넷신문
제2017-384호	인터넷 매일신문	2017년 6월 5일	스타뉴스	○○ 친아버지, 딸 유명세 앞세워 거액의 돈 가로채 “목사가 이래도 되냐”	인터넷신문
제2017-385호	인터넷 브릿지경제 신문	2017년 6월 6일	문화	○○父 “백만 원 현금했다 생각해라”... 실제 설교 영상 확인하니 ‘경악’	인터넷신문
제2017-386호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6월 6일	TV·방송	○○父 박○○ 목사, 200억대 사기로 구속...○○ 마케팅에 이용	인터넷신문
제2017-387호	인터넷 시민일보	2017년 6월 7일	연예	○○ 아버지, 실제 설교 영상 공개...“돈 직접적으로 말하는 설교 처음”	인터넷신문
제2017-388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7년 6월 6일	Visual	부친 사기 혐의 ○○, 母 언급 “법조계 바랐지만 지금은 연예인 하는 것 너무 좋아해”	인터넷신문
제2017-389호	인터넷 제민일보	2017년 6월 6일	연예	‘父 사기 혐의’ ○○, “母, 법조계서 일하길 바랐지만 연예인 하는 것 너무 좋아한다”	인터넷신문
제2017-390호	인터넷 충청매일	2017년 6월 6일	핫뉴스	○○, ‘연인’ 안타까운 마음뿐 ... ‘명상’에 고스란히 타격 입어	인터넷신문
제2017-391호	화이트페이퍼	2017년 6월 6일	사회/문화	‘핫이슈’ ○○, 어머니께 뺨 맞은 사연 “가수가 아닌 법조인 되길 바라셔...”	인터넷신문
제2017-392호	CBC뉴스	2017년 6월 6일	연예	○○, 부친 논란과 ‘연인’ 결별 연관에 더 힘들어해	인터넷신문
제2017-393호	e글로벌이코 노믹	2017년 6월 9일	연예·스포츠	‘200억 사기’ ○○ 아버지 박○○ 목사가 만든 단체 범죄조직으로 간주... 왜?	인터넷신문

제2017-394호	주식회사 천지일보
대상 보도	뉴스천지 2017년 6월 2일자 연예면 「빅뱅 ‘탑과 대마초한 연습생 누구?... 송지효 닮은 외모의 ‘○○○’ 출연자」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 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초상 및 성명, 방송 출연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39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395호	뉴스타운	2017년 6월 4일	문화/연예	빅뱅 탑, 자필 사과문 ... 대마초 연습생 한○○는? “반복성 확인시 조치 수준 격상”	인터넷신문
제2017-396호	디트news24	2017년 6월 4일	TV/연예	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한○○, SNS 도발 눈길 “오빠들이랑 껴안고 뽀뽀함”	인터넷신문
제2017-397호	문화뉴스	2017년 6월 2일	연예가화제	[단독] 빅뱅 탑 ‘대마초의 그녀’ 한○○, 연습생 한 달하고 그만둔 이유는?	인터넷신문
제2017-398호	미디어펜	2017년 6월 4일	연예/스포츠	빅뱅 탑, 자필 사과문 공개하자 한○○에 관심 집중...“XX 기사네”	인터넷신문
제2017-399호	비즈엔터	2017년 6월 2일	어라운드	탑과 함께 마약 적발된 연습생 A, ‘○○○ ○○○’ 출신 한○○	인터넷신문
제2017-400호	수원일보	2017년 6월 3일	연예/이슈/ 핫클릭	한○○, 빅뱅 탑과 대마초 혐의 자백...SNS 충격적 발언 “오빠랑 XX 껴안고 뽀뽀함”	인터넷신문
제2017-401호	스타서울TV	2017년 6월 4일	연예	대마초 탑, 한○○ “나 오빠들이랑 X나 껴안고 뽀뽀함” 충격 댓글보니?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402호	스타패션	2017년 6월 8일	스타	한○○, 탑 대마초 흡연 알린 A양 '주목'... "소지품이 결정적"	인터넷신문
제2017-403호	울산종합일보	2017년 6월 2일	핫이슈	빅뱅 탑 '대마초' 그녀 한○○, "내가 가수가 안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과거 발언 '화제'	인터넷신문
제2017-404호	월드투데이	2017년 6월 5일	사회	빅뱅의 탑, 한○○ 비키니 몸매... "오빠들이랑 뽀뽀인증..."	인터넷신문
제2017-405호	인터넷 데일리스포 츠월드	2017년 6월 2일	연예	[SW시선] "탑과 대마 흡연했다" 지목된 한○○는 누구? '○○○' 청순녀	인터넷신문
제2017-406호	인터넷 무등일보	2017년 6월 5일	사회	빅뱅 탑 대마초, 연습생 한○○ 자백...기획사 러브콜 쇄도하던 유망주 "썩썩"	인터넷신문
제2017-407호	인터넷 브릿지경제 신문	2017년 6월 4일	문화	빅뱅 탑, 자필 사과문 공개...한○○도 관심 집중 "나 XX 껴안고 뽀뽀함"	인터넷신문
제2017-408호	인터넷 시민일보	2017년 6월 6일	연예	'대마초 혐의' 탑, 덩달아 한○○까지 '관심집중'...유망주였다?	인터넷신문
제2017-409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7년 6월 5일	Visual	빅뱅 탑 대마초, 혐의 자백한 한○○ 연습생...데뷔 러브콜 쇄도하던 유망주 "어쩌다가?"	인터넷신문
제2017-410호	인터넷 제민일보	2017년 6월 8일	연예	탑 의식 회복...대마초 나눠 피운 한○○ "X로 사람도 죽일 수 있다...단정 짓지 말라"	인터넷신문
제2017-411호	인터넷 한라일보	2017년 6월 4일	뉴스	빅뱅 탑, 자필 사과문 ...대마초 연습생 한○○의 경우? "반복성 확인된다면 조치 격상" 이목 집중	인터넷신문
제2017-412호	쿠키뉴스	2017년 6월 2일	연예	탑과 대마 흡연한 연습생, '○○○ ○○' 참가자 한○○	인터넷신문
제2017-413호	톱스타뉴스	2017년 6월 2일	가요	탑과 함께 대마초 흡연한 연습생은 누구?... '○○○에 출연했던 한○○'	인터넷신문
제2017-414호	한강타임즈	2017년 6월 8일	이슈키워드	탑 의식 회복...대마초 연습생 한○○ 호소 "말로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인터넷신문
제2017-415호	Green Daily	2017년 6월 2일	라이프	빅뱅 탑 '대마초' 그녀 한○○ "내가 가수가 안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인터넷신문

제2017-416호	주식회사 펜세상
대상보도	시사위크 2017년 6월 7일자 연예면 「한○○, 네티즌수사대가 찾아낸 ‘어두운 과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초상 및 성명, 소속 등 신원정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417호	주식회사 서울미디어그룹
대상보도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2017년 6월 7일자 연예면 「한○○, 과거 SNS 논란?... “니네 오빠들이랑 못하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초상 및 성명 등 신원정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418호	주식회사 그린미디어
대상보도	e글로벌이코노믹 2017년 6월 4일자 연예·스포츠면 「탐 대마초 흡연 함께한 한○○… 처벌 어떻게 될까? 과거 sns에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초상 및 성명 등 신원정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419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일요서울 2017년 6월 12일자 20-21면 「빅뱅 대마초 흡연 논란으로 본 연예인들의 마약 흑역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성명 및 방송 출연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41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420호	일요서울	2017년 6월 9일	사회일반	빅뱅 탐 대마초...연예계 마약 흑역사	인터넷신문
제2017-421호	세계닷컴	2017년 6월 7일	사회	경찰 “탐 의식불명 아니다. 모든 수치 정상, 신경안정제 먹고 깊은 잠”	인터넷신문
제2017-422호	인터넷 금강일보	2017년 6월 8일	뉴스	탐 의식회복, 함께 대마초 피운 한○○ 누구? MBC ‘○○○○○’ 출연이력	인터넷신문
제2017-423호	한국정책신문	2017년 6월 9일	핫이슈	탐 의식 회복...‘○○○ ○○’ 출신 한○○, 지난해 탐 집에서 맥상 대마초 흡연	인터넷신문

제2017-424호	뉴데일리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데일리 2017년 6월 7일자 사회면 「“탐, 자극 가하면 눈 떠...10초 이상 집중 못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성명 및 나이 등 신원정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425호	서울시정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시정일보 2017년 6월 6일자 연예면 「탐, 반복되는 자살시도? 9년 전에도 약물 과다 복용 의혹」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성명 및 소속 등 신원정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426호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보도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5일 화제뉴스면 「마약흡입 탐, 의경 퇴소 확정...처벌후 재입대 불가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성명 등 신원정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433호	주식회사 스포츠조선
대상보도	스포츠조선닷컴 2017년 6월 5일자 라이프면 「‘○○○ ○ ○○ 치킨’ 최○○ 회장 성추행 혐의…목격자 “키스하고…” 경악」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특정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43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434호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2017년 6월 5일	사회	○○○○○○치킨 신입 비서 성추행, “할배가 술을 먹이더니”	인터넷신문
제2017-435호	e글로벌이코 노믹	2017년 6월 5일	사회	○○○○○○치킨 최○○ 회장 성추행 목격자 등장... “할배 옆 아가씨 지나가며 도움 요청”	인터넷신문

제2017-436호	주식회사 동아닷컴
대상보도	동아닷컴 2017년 6월 5일자 사회면 「“못 도망가게 손깎지 꼭!”...‘○○○ 치킨’ 최○○ 사건, 목격자 글 보니 ‘충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기사는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특정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해당 신체 부위가 언급된 인터넷 게시글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7-43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437호	디트news24	2017년 6월 5일	뉴스	○○○○○○치킨 최○○ 회장, 20대 직원 A씨 성추행 혐의 “나 믿지? 나 믿지?”	인터넷신문
제2017-438호	문화뉴스	2017년 6월 6일	사회	‘○○○ ○○○ 치킨’ 최○○ 회장 성추행 목격자 증언 보니...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7-439호	부산닷컴	2017년 6월 5일	사회	‘○○○○○○치킨’ 최○○ 회장, 성추행 목격자 “술 엄청 먹인 후 호텔 데려가”	인터넷신문
제2017-440호	브레이크뉴스	2017년 6월 5일	경제	‘○○○ 치킨’ 회장 성추행 목격자가 밝힌 사건 전말	인터넷신문
제2017-441호	스포츠한국	2017년 6월 6일	시사	‘○○○○○○치킨’ 최○○ 회장, 성추행 목격자 증언 보니 “도망 못가게 손까지 꽂”	인터넷신문
제2017-442호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2017년 6월 5일	사회	‘○○○ ○○○ 치킨’ 가맹점주들 직격탄 어떡해? 최○○ 회장 성추행 파문	인터넷신문
제2017-443호	인터넷 국제신문	2017년 6월 6일	사회	‘○○○ ○○○ 치킨’ 최○○ 회장 성추행 목격자 “아가씨 옷깃 잡으며 도와달라”	인터넷신문
제2017-444호	인터넷 금강일보	2017년 6월 5일	사회	‘○○○○○○치킨’ 최○○ 회장 성추행 목격자 “가면서도 아가씨가 뒤돌아보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인터넷신문
제2017-445호	인터넷 무등일보	2017년 6월 10일	뉴스센터	‘성추행 논란’ ○○○ ○○○ 치킨 최○○ 회장, “나를 향한 멸시가 엄청났다”	인터넷신문
제2017-446호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6월 6일	사회	○○○○○○치킨 최○○ 회장, 네티즌...“체인점이 불쌍하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447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6월 5일	사회	“○○○치킨 회장, 못 도망가게 손깎자... 여직원 ‘도와주세요’ 말해” 목격자 글	인터넷신문
제2017-448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2017년 6월 5일	이슈& 갤러리	‘○○○ ○ ○○ 치킨’ 최○○ 회장 성추행 목격자 “女가슴 만지고, 밀까지...”	인터넷신문
제2017-449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7년 6월 5일	Visual	‘○○○○○○○치킨’ 최○○, 비서 A씨 성추행 논란...러브샷에 키스 후 “나 믿지? 나 믿지?”	인터넷신문
제2017-450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2017년 6월 5일	정치· 사회	○○○ ○ ○○ 치킨 회장 피해 女는 비서... 사건 목격자 “러브샷하고 키스, 가슴도 만져”	인터넷신문
제2017-451호	인터넷 전자신문	2017년 6월 5일	사회	‘○○○○○○○치킨’ 최○○ 회장 성추행 목격자 “키스하며 가슴 만지더니... 호텔로 데려가”	인터넷신문
제2017-452호	인터넷 제민일보	2017년 6월 5일	연예	‘성추행 혐의’ ○○○○○○치킨 최○○, 비서 A씨에 러브샷+키스...“나 믿지? 나 믿지?”	인터넷신문
제2017-453호	인터넷 중부일보	2017년 6월 5일	사회	○○○○○○○치킨 최○○ 회장 20대女 성추행 목격담 일파만파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	인터넷신문

제2017-454호	주식회사 플러스코리아
대상보도	플러스코리아타임즈 2017년 4월 17일자 지자체뉴스면 「영주경찰서 ○○자율방범대 치매노인 안전 귀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권고사항	언론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치매환자의 초상 및 연령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455호	언론협동조합담쟁이
대상보도	현장언론 민플러스 2017년 5월 23일자 민족면 「“○○야, 빨리 평양으로 돌아오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456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일보 2017년 6월 2일자 9면 「“○○○ 마약」 국제우편 밀수 시도 ‘덜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구입 가격, 복용 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7-45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457호	부산닷컴	2017년 6월 1일	사회	‘○○○ 마약’ 국제우편 밀수 시도 ‘덜미’	인터넷신문
제2017-458호	노컷뉴스	2017년 6월 1일	사회	檢, 비트코인으로 신종마약 ○○○ 밀수입한 대학생 적발	인터넷신문

제2017-459호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상보도	연합뉴스 2017년 6월 1일자 전국면 「대학생이 ‘○○○ 마약’ 국제우편 밀수하려다 덜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복용 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45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460호	매경닷컴	2017년 6월 1일	사회	대학생이 ‘○○○ 마약’ 국제우편 밀수하려다 덜미	인터넷신문
제2017-461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6월 1일	사회	‘○○○ ○○○’ 신종마약 국제우편 밀수하려던 대학생 적발	인터넷신문
제2017-462호	BBS NEWS	2017년 6월 2일	전국	검찰, ○○○ 형태 신종 마약 ‘○○○’ 밀수한 대학생 붙잡아	인터넷신문

제2017-463호	빛가람뉴스
대상보도	빛가람뉴스 2017년 6월 8일자 사회면 「광주지방경찰청, “마약 판매한 태국인 일당 4명 검거. 구속”」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의 별칭, 구입 가격, 투약기구의 명칭 등을 공개하고 투약기구의 사진과 함께 복용 방법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46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464호	인터넷 내외신문	2017년 6월 8일	뉴스 보도자료	SNS 통해 마약 거래 투약한 태국인 근로자 4명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7-465호	투데이광주	2017년 6월 8일	사회	광주경찰청, 마약 판매 태국인 일당 4명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7-466호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대상보도	매일경제 2017년 5월 24일자 B7면 「한방병원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467호	주식회사 매경닷컴
대상보도	매경닷컴 2017년 5월 24일자 IT/과학면 「[Hospital & Trend] 한방병원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468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7년 5월 23일자 의료면 「차별화된 교정치료, ○○역 ‘○○○교정치과’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p>

	<p>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469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
대상 보도	KNS뉴스통신 2017년 5월 19일자 사회면 「○○피부과, 6월 1일 송파점 오픈...네트워크 병원체계 구축」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470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
대상보도	KNS뉴스통신 2017년 6월 7일자 사회면 「[의료정보] ○○○○치과 개원...“고양시 지역 주민 치아 건강 책임진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471호	주식회사 매경닷컴
대상보도	매경닷컴 2017년 6월 7일자 IT/과학면 「○○○한방병원, 9번째 분원 ‘부천 ○○○한의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472호	주식회사 뉴스씨
대상보도	인터넷 공감신문 2017년 5월 24일자 생활/문화면 「○○○○○, ○○○성형외과피부과의원으로 통합 확장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473호	주식회사 내일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내일신문 2017년 6월 1일자 사회면 「일산 ○○○○치과 ○○동 확장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474호	주식회사 더팩트
대상보도	더팩트 2017년 6월 12일자 단독/이슈면 「[단독] 국정농단 '석방 1호' 장시호, '행복한 가족 만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관련 인물인 장시호의 자택 내부의 생활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하였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47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475호	매경닷컴	2017년 6월 10일	정치	[단독] 국정농단 '석방 1호' 장시호, '행복한 가족 만찬'	인터넷신문
제2017-476호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6월 11일	사회	국정농단 '석방 1호' 장시호, 출소후 가장 먼저 "가족과 만찬"	인터넷신문
제2017-477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6월 10일	사회	장시호, 석방 후 모습 포착...최순득 등 가족과 저녁식사	인터넷신문

제2017-478호	주식회사 국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국제신문 2017년 6월 18일자 문화면 「윤○○ 아들·재벌총수 손자 연루된 '초등학생 폭행'...“소속사 변명이 기름 끼었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연예인의 아들이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해당 연예인 및 아들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479호	주식회사 공공미디어
대상보도	공공뉴스 2017년 6월 5일자 연예·스포츠면 「가인, 거침없는 대마초 폭로와 경고..잠자는 사자의 코털 건드렸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혐의자의 성명과 그가 특정 연예인과 지인 관계임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47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480호	뉴데일리	2017년 6월 5일	사회	가인에게 대마초 권유한 박○○ 대체 누구? “궁금증 폭발!”	인터넷신문
제2017-481호	뉴스엔	2017년 6월 4일	사회	가인, SNS로 충격 고백 “주○○ 친구 박○○, 내게 대마초 권유했다”	인터넷신문
제2017-482호	뉴스천지	2017년 6월 4일	핫이슈	가인 폭로 “주○○ 친구 박XX, 대마초 권유... 절대 하지 않을 것”	인터넷신문
제2017-483호	뉴스타운	2017년 6월 4일	문화/연예	가인 “주○○, 약한 건 벌 다 받았다... 박○○ 때문에 마약할 뻔” 공개 저격	인터넷신문
제2017-484호	뉴스핌	2017년 6월 4일	대중문화	가인 “네 전직 약쟁이 여자친구입니다”, 결국 폭발...주○○ 지인 마약 권유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7-485호	동아닷컴	2017년 6월 4일	연예	가인, SNS 추가 글 “이건 10분의 1도 안되는 이야기...미친X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7-486호	디스패치뉴스	2017년 6월 4일	TODAY	“기분 풀라고 떨어?”...가인, 대마초 권유 폭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487호	매경닷컴	2017년 6월 4일	스타투데이 뉴스	가인 “주○○ 친구, 내게 대마초 권유했다” 충격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7-488호	민중의소리	2017년 6월 5일	연예	가인, 대마초 권유 폭로..루머 양산 악플러에도 맞대응[종합]	인터넷신문
제2017-489호	부산닷컴	2017년 6월 4일	스포츠연예	가인은 왜 남자친구 주○○을 ‘전직 악쟁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	인터넷신문
제2017-490호	브레이크뉴스	2017년 6월 5일	연예	가인, “주○○ 친구 박○○..내게 대마초 권유했다” SNS 충격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7-491호	스타서울TV	2017년 6월 4일	연예	가인 “주○○ 친구가 딸(대마초) 권유...3개월마다 마약검사 받겠다”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7-492호	싱글리스트	2017년 6월 4일	연예	가인 “주○○ 친구, 내게 대마초 권유”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7-493호	아시아경제닷컴	2017년 6월 5일	연예/스포츠	경찰, 가인이 폭로한 ‘대마초 사건’ 조사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7-494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2017년 6월 4일	방송	가인 “주○○ 친구 박○○, 내게 대마초 권유했다”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7-495호	엑스포츠뉴스	2017년 6월 4일	연예	가인 “현재 정신병 치료중...불법 대마초는 하지 않아”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7-496호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6월 4일	문화	지인에 대마초 권유받았다고 폭로한 가인의 분노	인터넷신문
제2017-497호	이슈데일리	2017년 6월 4일	스타&화제	가인 “주○○ 친구 박○○에게 대마초 권유 받아” (전문포함)	인터넷신문
제2017-498호	이슈타임	2017년 6월 4일	연예·스포츠	가수 가인 “주○○ 친구 박○○ 씨, 나에게 대마초 권했다” 충격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7-499호	인터넷 국제신문	2017년 6월 5일	사회	가인에 대마초 권유 박○○, 경찰에 소환 예정...경찰, 내사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7-500호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6월 5일	문화	가인 “미친년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겠죠”... 네티즌 “연예계에서 다신 없을 사람” 응원 봇물	인터넷신문
제2017-501호	인터넷 비주얼다이브	2017년 6월 5일	연예	경찰, 브아걸 가인 ‘대마초 권유’ 폭로... 내사 착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02호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6월 4일	TV·방송	가인, 갑작스러운 충격 고백 “제가 아무리 주○○씨 여자친구라 해도…대마초 권유 넘어갈 뻔”	인터넷신문
제2017-503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2017년 6월 4일	연예	가인, 주○○ 친구에 대마초 권유 받았다?...“그땐 뒤진다” 분노	인터넷신문
제2017-504호	인터넷 스포츠투데이M	2017년 6월 4일	연예	가인 “주○○ 친구, 내게 대마초 권유해”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7-505호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2017년 6월 4일	연예	연예인 마약, 나비효과로? 주○○·가인·지드래곤·탑...	인터넷신문
제2017-506호	조이뉴스24	2017년 6월 12일	연예가화제	[상반기 결산]비·김태희 결혼, 마약·결별·열애...★10대 뉴스	인터넷신문
제2017-507호	쿠키뉴스	2017년 6월 4일	연예	가인 “주○○ 친구, 내게 대마초 권유했다”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7-508호	톱스타뉴스	2017년 6월 4일	가요	[스타근황] 가인, “주○○ 친구 박○○이 내게 대마초 권유”...‘대마초의 은어가 떨?’	인터넷신문
제2017-509호	티비리포트	2017년 6월 4일	엔터	가인 “주○○ 친구, 대마초 권유...절대 하지 않을 것”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7-510호	헤럴드POP	2017년 6월 4일	방송	[가인 인스타 고백②] “주○○ 여자친구라 대마초 권유 받았었다”	인터넷신문
제2017-511호	e머니투데이	2017년 6월 4일	사회	가인 “주○○ 친구, 내게 대마초 권유했다” 주장	인터넷신문
제2017-512호	TV Daily	2017년 6월 4일	방송	가인, 대마초 권유한 주○○ 친구에 경고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7-513호	주식회사 그린포스트코리아
대상보도	그린포스트코리아 2017년 6월 4일자 사회면 「가인에 대마초 권유한 주○○ 지인 박○○ “기분 풀어주려 한 것”...과거 예○○·윤○○ 마약 사태 재현되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혐의자의 성명과 그가 특정 연예인과 지인 관계임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51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0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14호	글로벌경제신문	2017년 6월 5일	사회	가인 충격 고백, “당차고 섹시한 가인이 얼마나 힘들길래” 걱정과 응원 이어져...대마초란?	인터넷신문
제2017-515호	넥스트데일리	2017년 6월 4일	스포츠/연예	가인, “저는 전직 약쟁이 여친입니다”...대마초 권유 폭로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7-516호	노컷뉴스	2017년 6월 6일	연예	누가 가인의 ‘사이다’에 돌을 던지나	인터넷신문
제2017-517호	데일리안	2017년 7월 7일	연예	‘가인’ 논란 확산... “저는 전직 약쟁이 여친입니다” 핫이슈 등극	인터넷신문
제2017-518호	로이슈	2017년 6월 5일	핫이슈	가인 충격 고백, “당차고 섹시한 가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걱정과 응원 봇물...대마초가 뭐길래?	인터넷신문
제2017-519호	비즈엔터	2017년 6월 5일	어라운드	경찰, 가인 대마초 권유 폭로 내부 검토 착수 “소환 조사, 협의 필요”	인터넷신문
제2017-520호	세계닷컴	2017년 6월 5일	연예	가인, ‘대마초 권유 폭로’ 충격 증폭...“저는 전직 약쟁이 여친입니다”	인터넷신문
제2017-521호	오에스이엔(OSEN)	2017년 6월 4일	연예	가인·주○○ 양 측, 지인 대마초 권유 폭로에 ‘노코멘트’[종합]	인터넷신문
제2017-522호	월드투데이	2017년 6월 5일	연예	가인, 대마초 권유 폭로 증심..배우,가수.. “박○○의 정체는?”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23호	인터넷 국제신문	2017년 6월 5일	사회	경찰, 가인 대마초 권유 폭로 수사 돌입 '관련 대상자 본격 내사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7-524호	인터넷 금강일보	2017년 6월 5일	문화	가인 "미친X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 적극 대응나서...	인터넷신문
제2017-525호	인터넷 데일리 스포츠월드	2017년 6월 4일	연예	가인 "주○○ 여자친구란 이유로... 대마초 권유 받았다" 충격글 게재	인터넷신문
제2017-526호	인터넷 스포셜경제	2017년 6월 4일	연예	가인 '대마초 논란'... "저는 전직 약쟁이 여친입니다" 충격 증폭	인터넷신문
제2017-527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2017년 6월 4일	연예	[DA:이슈] 가인 폭로 일지 "대마초 권유받아, 자진해 검사 받을 것"	인터넷신문
제2017-528호	인터넷 아주경제	2017년 6월 14일	연예·스포츠	[2017 상반기 연예] 사건·사고 "대마초와 음주운전 그리고 사망"	인터넷신문
제2017-529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7년 6월 4일	Visual	가인, 대마초 권유 주○○ 친구 폭로 "전 정신병환자입니다"	인터넷신문
제2017-530호	인터넷 울산매일	2017년 6월 7일	연예	누가 가인의 '사이다'에 돌을 던지나	인터넷신문
제2017-531호	인터넷이코노믹리뷰	2017년 6월 7일	엔터테인먼트	가인, 주○○과 쿨한 연애사 재조명 '결별설 침묵'	인터넷신문
제2017-532호	인터넷전자신문	2017년 6월 5일	핫이슈	[ET이슈] 가인부터 탑·차○○까지, 연예계 빨간불... '대마초 논란 확산'	인터넷신문
제2017-533호	인터넷 중도일보	2017년 6월 5일	사회/교육	가인 "1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 탑 이어 연예계 대마초 연루 또 누구?	인터넷신문
제2017-534호	인터넷크리스천투데이	2017년 6월 22일	일반	차○○ 마약 음주운전 실행, 가수 가인에 의해 폭로된 스타들의 마약 실체	인터넷신문
제2017-535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17년 6월 5일	연예	[fn★이슈] '탑 사죄·가인 폭로' 연예계 마약 논란, 수사 확대될까	인터넷신문
제2017-536호	인터넷 팜타임스	2017년 6월 5일	핫이슈	가인 충격 고백 "당차고 섹시한 가인이 얼마나 힘들어서" 걱정과 응원 봇물...대마초란?	인터넷신문
제2017-537호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6월 12일	연예뉴스	[Hi #이슈] 아이돌부터 중견배우까지, 마약스캔들 파장 어디까지	인터넷신문
제2017-538호	한인협	2017년 6월 5일	연예	가인 마약 대마초 얘기 왜 꺼냈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39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2017년 6월 4일	엔터테인먼트	가인이 자신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사람을 공개했다	인터넷신문
제2017-540호	화이트페이퍼	2017년 7월 7일	연예	가인 '대마초 논란'... "저는 전직 약쟁이 여친입니다" 충격 재조명	인터넷신문
제2017-541호	e글로벌이코 노믹	2017년 6월 6일	연예·스포츠	가인 조사에 경찰, "진위여부 판별일 뿐, 박 씨 범죄 특성은 시기상조"	인터넷신문
제2017-542호	enews24	2017년 6월 4일	연예가 화제	가인의 수난시대	인터넷신문
제2017-543호	Gvalley	2017년 6월 4일	방송연예	가인 "저는 전직 약쟁이 여친입니다" SNS 논란... 핫이슈 등극	인터넷신문

제2017-544호	재단법인 불교방송
대상보도	BBS NEWS 2017년 7월 4일자 전국면 「무시했다며 이웃 살해한 70대 남성 긴급체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성, 나이, 직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545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상보도	동아일보 2017년 7월 4일자 A12면 「“앤지 찜찜”... 두 남녀 은신 모텔주변 밤새 탐문한 ‘형사의 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살인) 피의자가 그가 ○○○ ○○○○ ○○의 신고로 검거되었다는 사실과 신고자의 성별, 나이, 운영 업체의 상호 이니셜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546호	주식회사 뉴스타운
대상보도	뉴스타운 2017년 7월 4일자 사회/환경면 「골프연습장 주부 살해 피의자, “시신 버렸지만 살해하진 않았다(?)” 주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살인) 피의자가 그가 ○○○ ○○○○ ○○의 신고로 검거되었다는 사실과 신고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 이니셜을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547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한겨레 2017년 7월 3일자 전국면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살해범 서울서 검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살인) 피의자가 그가 ○○○ ○○○○ ○○의 신고로 검거되었다는 사실과 신고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 초성을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548호	주식회사 국제신문
대상보도	국제신문 2017년 7월 4일자 6면 「'골프연습장 살해' 용의자 2명 도주 9일 만에 서울서 체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살인) 피의자가 그가 ○○○ ○○○○ ○○의 신고로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54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49호	인터넷 국제신문	2017년 7월 3일	사회	‘골프연습장 살해’ 용의자 2명, 도주 9일 만에 서울서 체포	인터넷신문
제2017-550호	서울신문	2017년 7월 4일	9면	경남 야산 수색 중에... ‘주부 살해 남녀’ 서울서 검거	중앙일간지
제2017-551호	시사포커스 신문	2017년 7월 3일	사회	창원 골프장 주부 납치 및 살해 용의자 2명 서울서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7-552호	인터넷 영남일보	2017년 7월 3일	사회	경남 창원의 한 골프장 40대 여성 납치·살해 일당 2명 모두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7-553호	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대상보도	아주경제 2017년 7월 4일자 19면 「골프연습장 주부 살해 용의자 2명 검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살인) 피의자가 그가 ○○○ ○○○○ ○○의 신고로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55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54호	인터넷 아주경제	2017년 7월 3일	뉴스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살해’ 용의자 2명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7-555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7월 3일	사회	골프연습장 40대 여성 납치 살해범 남녀 2명 모델서 붙잡혀	인터넷신문

제2017-556호	이데일리 주식회사
대상보도	이데일리 2017년 7월 4일자 27면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얼굴 드러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살인) 피의자가 그가 ○○○ ○○○○ ○○의 신고로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55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57호	인터넷 이데일리	2017년 7월 3일	사회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용의자 서울서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7-558호	조선일보	2017년 7월 4일	A12면	서울 뒷골목 모텔서 족발·피자 시켜먹으며 숨어 지냈다	중앙일간지
제2017-559호	조선닷컴	2017년 7월 4일	사회	서울 뒷골목 모텔서 족발·피자 시켜먹으며 숨어 지냈다	인터넷신문
제2017-560호	동아닷컴	2017년 7월 3일	사회	'골프연습장 여성 납치·살인사건' 용의자 2명 서울서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7-561호	문화뉴스	2017년 7월 3일	사회	'현상금 500만원' 창원 골프장 납치 용의자 남녀, 시민 제보로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7-562호	인터넷 스포츠투데이IM	2017년 7월 3일	라이프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용의자 검거...“○○○○의 제보 덕분”	인터넷신문
제2017-563호	인터넷 일요시사	2017년 7월 5일	사회	심○○ “내가 죽었다” 체포 하루 만에 자백	인터넷신문
제2017-564호	쿠키뉴스	2017년 7월 3일	사회	[이덧글봤어?]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용의자검거...“서울까지 오다니 간도 커”	인터넷신문

제2017-565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노컷뉴스)				
대상보도	노컷뉴스 2017년 7월 3일자 사회면 「창원 납치살해 남녀 2명 서울서 검거…사건발생 10일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살인) 피의자가 그가 ○○○ ○○○○ ○○의 신고로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56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66호	뉴스데일리	2017년 7월 3일	종합뉴스	창원 골프장 연습장 납치살해 남녀 2명 서울서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7-567호	인터넷 울산매일	2017년 7월 3일	뉴스Now	창원 납치살해 남녀 2명 서울서 검거…사건발생 10일만	인터넷신문

제2017-568호	주식회사 뉴스데일리				
대상보도	뉴스데일리 2017년 7월 3일자 종합뉴스면 「창원 골프장 연습장 납치살해 남녀 2명 서울서 검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살인) 피의자가 그가 ○○○ ○○○○ ○○의 신고로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569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6월 19일자 사회면 「“아이가 왜 따라갔는지 알겠다” 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판 후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범죄사건에 관한 인터넷 게시글을 그대로 노출하고,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56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70호	울산종합일보	2017년 7월 5일	햇이슈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박양 재판 후기, 누리꾼 경악 “김양이 루미놀 반응, 미성년 살인 등 미리 검색”	인터넷신문
제2017-571호	Green Daily	2017년 7월 5일	라이프	인천초등생 살인범 공범 박양 ‘방청 후기’ 경악, “핸드폰 기록 확인해보니 밀실 트릭, CCTV 혼선 등 찾은 흔적 발견 돼”	인터넷신문

제2017-572호	주식회사 일요시사
대상보도	일요시사 2017년 6월 28일자 58면 「초등 부장교사 ‘더듬더듬’ 체육코치 성추행」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삽화를 통해 범죄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573호	주식회사 일요시사
대상보도	인터넷 일요시사 2017년 6월 15일자 사회면 「'더듬더듬' 초등 부장교사 체육코치 성추행」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삽화를 통해 범죄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574호	주식회사 스카이데일리
대상보도	스카이데일리 2017년 6월 15일자 산업면 「파멸의 마약식물, 누구나 손쉽게 신발 사듯 산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구입 가격, 복용 방법,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575호	경북도민일보 주식회사
대상 보도	경북도민일보 2017년 6월 22일자 10면 「지역 병원문화 선도 ‘○○○○치과’ 새롭게 문연다」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576호	경북도민일보 주식회사
대상 보도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2017년 6월 22일자 특집면 「지역 병원문화 선도 ‘○○○○치과’ 새롭게 문연다」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p>

	<p>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577호	주식회사 기호일보
대상보도	기호일보 2017년 6월 13일자 17면 「풍부한 임상 경험·실력 갖춘 전문의들에 눈길 절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57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78호	인터넷 기호일보	2017년 6월 13일	사람과 사람	○○외과 ○○○무역센터 4층에 문 열어	인터넷신문
제2017-579호	인터넷 중부일보	2017년 5월 26일	인천	메디컬 라운지 - ○○외과, 인천지역 주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인터넷신문

제2017-580호	주식회사 기호일보
대상보도	기호일보 2017년 6월 26일자 17면 「‘세상의 빛’ 선물하는 의료인 힘찬 도약을 외치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58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81호	인터넷 기호일보	2017년 6월 26일	사람과 사람	연수○안과 ○○○○도시 확장이전 개원식	인터넷신문
제2017-582호	중부일보	2017년 6월 23일	21면	연수○안과, ○○ ○○○센터 확장 이전	지역일간지
제2017-583호	인터넷 중부일보	2017년 6월 23일	인천	[메디컬 라운지] 안과 전문 병원 ‘연수 ○안과’	인터넷신문
제2017-584호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6월 21일	시사	연수○안과 ○○ 랜드마크 ○○○○센터 5층에서 영업개시	인터넷신문

제2017-585호	주식회사 메디파나
대상보도	메디파나뉴스 2017년 6월 20일자 메디시안면 「○○, 산전산후센터 7월 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58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86호	메디팜스 투데이	2017년 6월 20일	의료/병원	○○, 산전산후센터 7월 오픈	인터넷신문
제2017-587호	보건뉴스	2017년 6월 20일	메디뉴스	○○, 산전산후센터 7월 오픈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	인터넷신문
제2017-588호	인터넷 격주간 의료정보	2017년 6월 20일	병원·의료	○○, 산전산후센터 7월 오픈	인터넷신문
제2017-589호	인터넷 의계신문	2017년 6월 20일	병원	○○○○○ 산전 산후센터 오픈	인터넷신문

제2017-590호	주식회사 메디파나
대상보도	메디파나뉴스 2017년 6월 28일자 메디시안면 「○○ 신경근골격센터 ‘바디 밸런스 검진’ 출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59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591호	보건뉴스	2017년 6월 28일	메디뉴스	○○ 신경근골격센터 ‘바디 밸런스 검진’ 출시	인터넷신문
제2017-592호	의약뉴스	2017년 6월 28일	의사·병원	○○ 신경근골격센터 ‘바디 밸런스 검진’ 출시	인터넷신문
제2017-593호	인터넷 의학신문	2017년 6월 28일	병원	○○ 신경근골격센터 ‘바디 밸런스 검진’ 출시	인터넷신문

제2017-594호	주식회사 에이치앤씨텔레그래프
대상보도	데일리그리드 2017년 6월 23일자 정보산업면 「○○○○ 수원점 개원 ‘야간 진료 등 맞춤형 뽀띠 피부 클리닉 서비스’ 제공」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595호	주식회사 뉴시스헬스
대상보도	데일리뉴스인(뉴스 인) 2017년 6월 13일자 의료면 「‘암환자 재활’ 전문병원, ○○○○요양병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596호	주식회사 문화뉴스
대상 보도	문화뉴스 2017년 6월 9일자 뉴스면 「한방 다이어트 치료 ‘○○○한의원’, 부산 ○○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597호	주식회사 브레인박스벤처마크
대상 보도	브레인박스 2017년 6월 19일자 뉴스면 「○○○○치과병원, 의료 서비스 개선 위한 확장 이전 실시」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598호	주식회사 뉴스미디어그룹
대상 보도	스타데일리뉴스 2017년 6월 23일자 문화·생활면 「○○○피부과, ○○점 개원 ‘○○ 주민 피부 책임진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599호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웍
대상보도	스포츠한국 2017년 7월 3일자 경제면 「○○성형외과 강남역 확장·이전, 복합 뷰티 공간으로 변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00호	주식회사 뉴스씨
대상보도	인터넷 공감신문 2017년 6월 20일자 생활/문화면 「최적화된 전문의 교정치과, ○○○○치과교정과 ○○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p>

	<p>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601호	인터넷 엠디(MD)
대상 보도	인터넷 엠디(MD) 2017년 7월 4일자 MDFOCUS면 「통증의학과를 찾는 사람들, 남 일이 아니다?」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02호	주식회사 헬스조선
대상 보도	인터넷 헬스조선 2017년 6월 28일자 특집기사면 「여성 전문 암요양병원」 ○○요양병원, “암 치료를 넘어 건강한 삶까지… 집보다 편안한 요양”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03호	주식회사 한경닷컴
대상보도	한경닷컴 2017년 6월 19일자 사회면 「○○○○의료재단, 서울 ○○동에 ○○요양병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04호	상조뉴스 주식회사
대상보도	e시사한국 2017년 7월 4일자 경제면 「내 치아 살릴 것이냐? 뺄 것이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05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7년 7월 13일자 전국면 「○○ 신도시 2월에 이어 ‘두번째 정전 사고 발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소방서의 구조 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06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대상보도	노컷뉴스 2017년 7월 4일자 지역면 「‘4층에 잡혀있다’ 태국인 성매매 여성이 건넌 쪽지 한 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성매매) 피의자가 그가 방문했던 ○○ ○○○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사실과 신고자의 성, 성별, 나이 및 근무지 내부 사진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60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607호	인터넷 울산매일	2017년 7월 5일	뉴스Now	‘4층에 잡혀있다’ 태국인 성매매 여성이 건넌 쪽지 한 장	인터넷뉴스
제2017-608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2017년 7월 6일	뉴스	감금당한 태국 여성의 ‘도와달라’는 쪽지 덕에 성매매 일당을 검거했다	인터넷뉴스

제2017-609호	주식회사 채널에이	
대상보도	채널A 2017년 7월 4일 19:10 <종합뉴스> 프로그램 「“4층에 잡혀있다”...태국 여성 쪽지에 절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방송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성매매) 피의자가 그가 방문했던 ○○ ○○○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사실과 신고자의 근무지 내부 영상을 공개하였다.</p> <p>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7-60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610호	JTBC	2017년 7월 5일	뉴스현장	○○○에 찍지 신고...태국 성매매 여성들 '필사의 탈출'	방송
제2017-611호	KBS-2TV	2017년 7월 5일	아침뉴스 타임	[뉴스 따라잡기] "잡혀있다" 감금 성매매 태국 여성, 찍지로 구출 요청	방송
제2017-612호	KNN	2017년 7월 4일	뉴스 아이	성매매 태국여성, 찍지 신고로 극적 탈출	방송
제2017-613호	MBN	2017년 7월 5일	굿모닝 mbn	"도와주세요" 어설픈 찍지에 태국 여성 감금 성매매 덜미	방송
제2017-614호	SBS-TV	2017년 7월 4일	8뉴스	"도와주세요" 몰래 찍지...성매매 태국여성 극적 탈출	방송
제2017-615호	매경닷컴	2017년 7월 4일	사회	"4층에 있어요" 태국여성 절박한 찍지로 성매매 일당 잡아	인터넷뉴스
제2017-616호	부산닷컴	2017년 7월 4일	사회	"도와주세요" 태국 여성 찍지 감금 성매매 업주 일당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17호	주식회사 문화일보
대상보도	문화일보 2017년 7월 4일자 10면 「감금·성매매 泰여성 ... "도와달라" 필사의 찍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성매매) 피의자가 그가 방문했던 ○○ ○○○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사실과 신고자의 성, 성별, 나이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하였다.

	<p>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7-61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618호	인터넷 문화일보	2017년 7월 4일	사회	성매매 리스트 1만명... 태국女 “SOS” 필사의 쪽지	인터넷뉴스
제2017-619호	아시아경제 닷컴	2017년 7월 5일	사회	‘감금하고 불법 성매매’...피해 여성들 필사의 쪽지로 지옥서 벗어나	인터넷뉴스
제2017-620호	인터넷 경남신문	2017년 7월 4일	사회	태국인 성매매 여성, ‘4층에 잡혀있다’ 쪽지 한 장에 일당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21호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2017년 7월 4일	사회	태국 여성 쪽지 신고, 성매매 일당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22호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상보도	중앙일보 2017년 7월 5일자 12면 「태국여성 5명 부산서 감금 성매매... 업주 폰에 남성 2만 명 리스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성매매) 피의자가 그가 방문했던 ○○ ○○○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사실과 신고자의 성, 나이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하였다.</p> <p>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23호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7월 5일자 사회면 「태국여성 5명 부산서 감금 성매매... 업주 폰에 남성 2만 명」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성매매) 피의자가 그가 방문했던 ○○ ○○○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사실과 신고자의 성, 나이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624호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대상보도	경남신문 2017년 7월 5일자 7면 「성매매 지옥서 벗어난 태국여성의 ‘쪽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성매매) 피의자가 그가 방문했던 ○○ ○○○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사실과 신고자의 성별, 나이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625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보도	경향신문 2017년 7월 5일자 10면 「서툰 한글로 “도와달라” 쪽지...‘감금 성매매’ 태국 여성 구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성매매) 피의자가 그가 방문했던 ○○ ○○○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62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6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626호	인터넷 경향신문	2017년 7월 4일	사회	서툰 한글로 “도와달라” 쪽지...‘감금 성매매’ 태국 여성 구조	인터넷뉴스
제2017-627호	동아일보	2017년 7월 5일	A14면	“4층에 잡혔다” 성매매 태국여성의 SOS 쪽지	중앙일간지
제2017-628호	동아닷컴	2017년 7월 5일	사회	“4층에 잡혔다” 성매매 태국여성의 SOS 쪽지	인터넷뉴스
제2017-629호	매일경제	2017년 7월 5일	A27면	“4층에 있어요” 태국여성 절박한 쪽지로 성매매 일당 잡아	중앙일간지
제2017-630호	세계일보	2017년 7월 5일	12면	감금·성매매 태국 여성 구조요청 ‘쪽지’	중앙일간지
제2017-631호	세계닷컴	2017년 7월 4일	사회	감금·성매매 태국 여성 구조요청 ‘쪽지’	인터넷뉴스
제2017-632호	조선일보	2017년 7월 5일	A12면	“4층에 잡혀있다”... 성매매 태국女 절박한 ‘SOS 쪽지’	중앙일간지
제2017-633호	조선닷컴	2017년 7월 5일	사회	“4층에 잡혀있다”... 성매매 태국女 절박한 ‘SOS 쪽지’	인터넷뉴스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634호	한국일보	2017년 7월 5일	11면	“태국(인)이 건물에 있다” 성매매 일당에 감금됐다 쪽지로 살아난 외국여성	중앙일간지
제2017-635호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7월 4일	사회	“태국(인)이 건물에 있다” 성매매 일당에 감금됐다 쪽지로 살아난 외국여성	인터넷뉴스
제2017-636호	국제신문	2017년 7월 5일	6면	감금 태국여성 ‘쪽지 신고’로 성매매 일당 검거	지역일간지
제2017-637호	인터넷 국제신문	2017년 7월 4일	사회	감금 태국여성 ‘쪽지 신고’로 성매매 일당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38호	부산일보	2017년 7월 5일	9면	“도와주세요” 태국 여성 쪽지 감금 성매매 업주 일당 검거	지역일간지
제2017-639호	연합뉴스TV	2017년 7월 4일	뉴스 리뷰	감금된 태국 여성 쪽지신고로 성매매 일당 검거	방송
제2017-640호	뉴스스	2017년 7월 4일	사회	태국 여성 입국시켜 성매매·마사지 업소 알선 브로커 등 77명 검거	뉴스통신
제2017-641호	뉴스파인더	2017년 7월 4일	사회	감금된 태국 여성의 쪽지 신고로 성매매 일당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42호	뉴스한국닷컴	2017년 7월 5일	사회	태국 국적 여성 쪽지로 구조 요청...경찰, 성매매 현장 덮쳐 업주·브로커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43호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7월 4일	시사	부산경찰, 태국여성 성매매 알선 브로커 등 77명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44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7월 4일	사회	태국 여성 감금, 성매매 알선 브로커 등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45호	인터넷 신아일보	2017년 7월 4일	전국네트 워크	부산경찰, 태국여성 성매매 알선 브로커 무더기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46호	인터넷 한겨레	2017년 7월 4일	사회	태국 여성 “도와주세요” 쪽지 건네 성매매 일당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47호	인터넷 The Korea Times	2017년 7월 4일	사회	감금된 여성 쪽지 신고로 성매매 일당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48호	투데이코리아	2017년 7월 5일	사회	태국 여성 납치 감금, 불법 성매매 일당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49호	프레시안	2017년 7월 4일	뉴스	“도와주세요” 쪽지신고로 국제 성매매 브로커 무더기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50호	한강타임즈	2017년 7월 4일	사회	태국 여성 위장 결혼, 성매매·마사지 업소 알선 브로커들 검거	인터넷뉴스
제2017-651호	BBS NEWS	2017년 7월 4일	전국	위장결혼에 감금...태국여성 ‘쪽지로 도움 요청’	인터넷뉴스

제2017-652호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대상보도	매일신문 2017년 7월 26일자 21면 「○○재건병원, 옛 ○○시청 별관으로 확장 이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65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653호	인터넷 매일신문	2017년 7월 26일	건강	[건강쪽지] ○○재건병원, 옛 ○○시청 별관으로 확장 이전	인터넷뉴스
제2017-654호	인터넷 영남일보	2017년 8월 8일	건강	[의료 단신] ○○재건병원 확장 이전	인터넷뉴스

제2017-655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7년 7월 20일자 의료면 「현대인의 두통, ○○○○ 척추 교정치료로 원인부터 뿌리 뽑아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56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
대상보도	KNS뉴스통신 2017년 8월 1일자 Health & Life면 「[의료정보] 어지럼증, 이명 유발하는 ‘만성두통’, 국내서 치료 가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57호	뉴스페이퍼
대상보도	뉴스페이퍼 2017년 8월 7일자 문화면 「여름철 안구건조증 환자 급증, 스마일라식 ○○안과 “인공눈물보다 확실한 치료 필요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65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658호	대한금융신문	2017년 7월 18일	HotIssue	강남역 ○○안과, 휴가철 라단기, 스마일라식 병원으로 인기	인터넷뉴스
제2017-659호	수원일보	2017년 7월 11일	사회	[메디 스토리] 강남역 ○○안과, 컬러 하드렌즈 ‘공막렌즈’ 도입	인터넷뉴스
제2017-660호	인터넷 인천일보	2017년 7월 27일	사람들	강남 ○○안과 “휴가 이용한 스마일라식, 오랜 경험과 수술 전후관리 등 꼼꼼히 체크해야”	인터넷뉴스

제2017-661호	주식회사 메디팜스
대상보도	메디팜스투데이 2017년 7월 10일자 의료/병원면 「○○○재활병원, “재활전문병원 글로벌 스탠더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62호	주식회사 의학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의학신문 2017년 7월 10일자 의원·병원면 「○○○재활병원 “국내 재활 병원 표준모델로 우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63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
대상보도	KNS뉴스통신 2017년 7월 24일자 사회면 「[의료정보] 은평구 ○○○역 치과교정 치과의원 ‘○○○교정치과’ 29일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664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
대상보도	KNS뉴스통신 2017년 7월 25일자 인터뷰면 「[인터뷰] 김○○ 원장, “네비게이션임플란트로 통증과 부작용 최소화 하는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665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8월 2일자 시사면 「○○치과병원, 분과별 협진 시스템 구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66호	주식회사 뉴스토마토
대상보도	인터넷 뉴스토마토 2017년 7월 18일자 사회면 「소아 아토피 전문, 청주 ○○○○피부과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67호	주식회사 뉴스토마토
대상보도	인터넷 뉴스토마토 2017년 7월 27일자 사회면 「대전재활병원 ○○○병원 8월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p>

	<p>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668호	담양인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담양인신문 2017년 7월 6일자 기획면 「기획/사람이 중심이 되는 ○○요양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69호	주식회사 한민족미디어
대상보도	인터넷 한민족신문 2017년 7월 19일자 특별기획면 「내 아이의 키는 얼마나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70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7년 7월 19일자 뉴미디어경영센터면 「○○○○치과병원, 10년 만에 임플란트 누적 10만 건 수술 달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p>

	<p>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671호		주식회사 한경닷컴
대상보도	한경닷컴 2017년 7월 28일자 사회면	「○○척관병원 대표원장 출신 장○○ 원장, 수원 ‘○○○신경외과의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672호	주식회사 전민일보
대상보도	전민일보 2017년 8월 28일자 14면 「○○ ○동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집 대청소 ‘구슬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지역 사회의 봉사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수혜자인 독거노인의 질환 및 장애 유형과 함께 그의 성명, 성별, 나이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673호	강원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강원신문 2017년 8월 24일자 지역면 「양양군 ○○천 폭우로 피서객 5명 고립... 소방당국, 로프로 전원 구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소방서의 구조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성명, 성별, 나이, 주소 또는 재학 중인 학교명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674호	포천시민방송
대상보도	포천시민방송 2017년 8월 19일자 포천소식면 「양주시 ○○면 “어린이집 파리채” 폭행-2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 아동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675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유한회사
대상보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년 8월 23일자 뉴스면 「한국인 남성이 일본 편의점에서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676호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대상보도	경남신문 2017년 8월 21일자 14면 「밀양시보건소, 치매 어르신 배회 인식표 부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권고사항	언론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치매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67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677호	인터넷 경남신문	2017년 8월 21일	사람 마당	밀양시보건소, 치매 어르신 배회 인식표 부착	인터넷뉴스
제2017-678호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2017년 8월 20일	People & People	밀양보건소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무료 부착	인터넷뉴스
제2017-679호	인터넷 한남일보	2017년 8월 18일	지역	밀양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관리에 팔 걷어	인터넷뉴스

제2017-680호	부산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부산일보 2017년 9월 6일자 3면 「“어차피 살인미수... 더 때리면 안되겠냐” “피냄새가 좋다” “맞은 기억 잃게 만들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기사는 폭행사건 목격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잔인한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7-68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0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681호	부산닷컴	2017년 9월 5일	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사건 목격한 피해자 친구 녹취록 전문	인터넷뉴스
제2017-682호	노컷뉴스	2017년 9월 5일	사회	[인터뷰]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 모 “사회전화 한통 없었다”	인터넷뉴스
제2017-683호	데일리중앙	2017년 9월 5일	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학생들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 잔혹성 충격	인터넷뉴스
제2017-684호	세계닷컴	2017년 9월 5일	사회	“맞은 것도 기억 못하게 때리자”...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목격담	인터넷뉴스
제2017-685호	시빅뉴스	2017년 9월 6일	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충격 발언	인터넷뉴스
제2017-686호	인터넷 국제신문	2017년 9월 5일	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모 “가해 학생들 사과 못 받아”...적반하장 격	인터넷뉴스
제2017-687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2017년 9월 5일	생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목격자 증언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라고...” 충격	인터넷뉴스
제2017-688호	인터넷 울산매일	2017년 9월 6일	뉴스Now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 모 “사회전화 한통 없었다”	인터넷뉴스
제2017-689호	인터넷 크리스천 투데이	2017년 9월 5일	일반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가해자 나이·지수 등으로 처벌 어려워VS녹음 등 증거자료 많아	인터넷뉴스
제2017-690호	조선닷컴	2017년 9월 5일	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 목격자 진술 녹음 들어보니...쇠파이프·소주병으로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인터넷뉴스

제2017-691호	주식회사 동아닷컴
대상보도	동아닷컴 2017년 9월 4일자 사회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제2의 피해자는 A 교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폭행사건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상세히 묘사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69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692호	매경닷컴	2017년 9월 3일	사회	피투성으로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 SNS에 퍼져	인터넷뉴스
제2017-693호	문화저널21	2017년 9월 3일	사회일반	SNS에 피투성으로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 '일파만파' 퍼져	인터넷뉴스
제2017-694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7년 9월 4일	사회	신동욱, 부산 여중생 폭행에 문재인 정부 비판 "안보가 무너지니 치안도 무너진 꼴"	인터넷뉴스
제2017-695호	인터넷 여성신문	2017년 9월 9일	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11일 영장심사 진행 후 형사재판으로 진행	인터넷뉴스
제2017-696호	인터넷 제민일보	2017년 9월 4일	연예	솔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언급 한 번 만에... "애 때렸어, 심해?" 사건 후 반응	인터넷뉴스
제2017-697호	포커스데일리	2017년 9월 3일	전국	'SNS 피투성이 여중생' 경찰 조사... 신상털기로 2차 피해도 '우려'	인터넷뉴스
제2017-698호	한국시민기자 협회 뉴스포털1	2017년 9월 5일	시민사회	"소년법 최대 형량 제한제도, 차등 적용 도입해야"	인터넷뉴스

제2017-699호	뉴스에듀
대상보도	뉴스에듀 2017년 9월 3일자 사회면 「[사건] 피투성이 무릎 꿇은 부산 여중생 사진 일파만파 ... “조폭 저리가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폭행사건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묘사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69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700호	뉴스프리존	2017년 9월 3일	포토뉴스	부산여중생 피투성이 무릎 꿇은 사진 ..SNS 확산...경찰 '조시중'	인터넷뉴스
제2017-701호	뉴시스	2017년 9월 3일	사건/사고	피투성이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 확산... 경찰, 가해 여중생 2명 조사 중	뉴스통신
제2017-702호	스포츠Q	2017년 9월 4일	방송	[초점Q]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잔인성에 대중들 '그것이 알고싶다'-'리얼스토리 눈' 등 심층취재 요구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후 또다시 취재 나서나	인터넷뉴스
제2017-703호	위키트리	2017년 9월 4일	방송·연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솔비가 남긴 글	인터넷뉴스
제2017-704호	인터넷 경상일보	2017년 9월 4일	연예/시사	부산 여중생 폭행, 선배에 보낸 인증샷 '충격'...'심해? 교도소 들어갈 것 같아?"	인터넷뉴스
제2017-705호	인터넷 기호일보	2017년 9월 4일	핫이슈	청와대 청원 , 태어나면서 괴물은 없어, 영향 준 사람도 책임	인터넷뉴스
제2017-706호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9월 3일	사회	SNS 확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진...가해 여중생 2명 입건	인터넷뉴스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707호	인터넷 위클리오늘	2017년 9월 7일	사회	뜨거운 ‘소년법’ 논란, 미완성의 法… 일본·독일·영국은 어떤가?	인터넷뉴스
제2017-708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2017년 9월 3일	사회	피투성 상태로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 경찰 “자수한 가해 여중생 2명 조사중”	인터넷뉴스
제2017-709호	인터넷 일요시사	2017년 9월 4일	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 ‘피투성이 사진’ SNS 확산 논란	인터넷뉴스
제2017-710호	인터넷 충청매일	2017년 9월 7일	핫뉴스	여중생 폭행, 피투성이 이지메 막을수도, 지속적 계획적이었나	인터넷뉴스
제2017-711호	쿠키뉴스	2017년 9월 3일	사회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경찰, 용의자 2명 조사 중	인터넷뉴스
제2017-712호	투데이안	2017년 9월 8일	사회	학교폭력 트라우마도 심각…자살시도에 가해자로 돌변	인터넷뉴스
제2017-713호	투데이코리아	2017년 9월 6일	사회	부산에 이어 강릉에서 또..갈수록 참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인터넷뉴스
제2017-714호	한강타임즈	2017년 9월 4일	사건/사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폭행당시 내 정신상태 온전치 못해.. 육하지 말아달라”	인터넷뉴스
제2017-715호	한경닷컴	2017년 9월 4일	연예	청와대 홈페이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마비…청원 3만명 돌파	인터넷뉴스
제2017-716호	CBC뉴스	2017년 9월 4일	사회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청와대 청원…태어나면서 괴물은’	인터넷뉴스

제2017-717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9월 6일자 시사면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피 냄새 좋다…” 도 넘은 잔인함」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기사는 폭행사건 목격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잔인한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묘사된 사진을 게재하였다.</p> <p>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718호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p>투스타뉴스 2017년 9월 5일자 핫이슈면</p> <p>「김현정의 뉴스쇼」, 피해학생 어머니와 현장 목격자 진술」 제하의 보도</p>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p>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이 유	<p>위 기사는 폭행사건 목격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잔인한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묘사된 사진을 게재하였다.</p> <p>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719호	굿데일리
대상보도	<p>굿데일리 2017년 9월 4일자 사회면</p> <p>「부산 여중생 폭행, 범행 자랑후 경찰에 자수.. 죄의식 못느끼나?」 제하의 보도</p>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p>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이유	<p>위 기사는 폭행사건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상세히 묘사된 사진을 게재하고 잔인한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였다</p> <p>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71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720호	뉴스인사이드	2017년 9월 4일	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 사촌언니 “오빠들이랑 길에서 XX하라고...” 분노	인터넷뉴스
제2017-721호	베타뉴스	2017년 9월 5일	종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사촌언니 ‘충격’ 주장글...진위여부 관심	인터넷뉴스
제2017-722호	울산종합일보	2017년 9월 4일	핫이슈	‘무서운 아이들’ 부산여중생폭행, 범행 자랑 후 경찰에...죄의식 못 느끼나?	인터넷뉴스
제2017-723호	인터넷 신아일보	2017년 9월 3일	사회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진’ 확산...경찰 “조사 중”	인터넷뉴스
제2017-724호	조선닷컴	2017년 9월 3일	법원·검 찰·경찰	SNS에 떠돈 피투성으로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 진짜였다...경찰 “조사중”	인터넷뉴스
제2017-725호	투스타뉴스	2017년 9월 4일	핫이슈	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는 고작 ○○세... 담배불 몸에 지지고 쇠파이프로 구타	인터넷뉴스
제2017-726호	폴리뉴스	2017년 9월 4일	핫이슈	부산 여중생 폭행, 무서운 아이들! ... SNS에 범행 자랑 후 당당하게 지수!	인터넷뉴스
제2017-727호	e글로벌이코 노믹	2017년 9월 4일	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신동욱 “피해자에 인권은 개법에 도토리 쫄”	인터넷뉴스

제2017-728호	주식회사 스타뉴스	
대상보도	스타뉴스 2017년 9월 4일자 이슈면 「부산 여중생폭행 사건..네티즌 공분 “소년법 폐지하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폭행사건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묘사된 사진을 게재하고 잔인한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72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729호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9월 5일	시사	만 14세 미만도 포함...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형사 처벌 ‘시끌’	인터넷뉴스
제2017-730호	인터넷 서울시정일보	2017년 9월 3일	사회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사진 급속히 유포... “말투가 건방져서”	인터넷뉴스
제2017-731호	Green Daily	2017년 9월 4일	라이프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 사진 접한 대중 분노 “저 정도면 살인미수”	인터넷뉴스

제2017-732호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대상보도	월간 조선 2017년 8월호 사회면 「'빅뱅'의 탐과 함께 대마초 피운 한씨가 사들인 ○○○는 무엇?」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월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복용 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733호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대상보도	조선pub 2017년 8월 1일자 사회면 「'빅뱅'의 탐과 함께 대마초 피운 한씨가 사들인 ○○○는 무엇?」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복용 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734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7년 8월 29일자 사건사고면 「“우리 엄마 상처 줬냐” 아빠 ‘내연녀’ 폭행한 아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무차별한 폭력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735호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대상보도	매일경제 2017년 8월 9일자 B5면 「○○외과, 초기 암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736호	주식회사 매경닷컴
대상보도	매경닷컴 2017년 8월 9일자 뉴스면 「[Health] ○○외과, 초기 암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737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일보 2017년 8월 23일자 E3면 「자신의 이보다 좋은 건 없다… ‘치아 보존’에 초점 맞춰 치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p>

	<p>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738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7년 8월 23일자 사회면 「[액티브+] 자신의 이보다 좋은 건 없다… ‘치아 보존’에 초점 맞춰 치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739호		주식회사 기호일보
대상보도	기호일보 2017년 8월 23일자 14면 「지역사회 공헌~명품 의료서비스 ‘최고의 길’을 걷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740호		주식회사 기호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기호일보 2017년 8월 23일자 보건/의료면 「지역사회 공헌~명품 의료서비스 ‘최고’의 길을 걷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p>	

	<p>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741호	주식회사 충청일보재단
대상보도	충청일보 2017년 8월 14일자 13면 「진천 ○○○○○○○○○내과의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74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742호	인터넷 충청일보	2017년 8월 13일	충북	진천 ○○○○○○○내과의원 개원	인터넷뉴스
제2017-743호	인터넷 중부매일	2017년 8월 13일	충북	진천 ○○○ ○○○내과의원 개원	인터넷뉴스

제2017-744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
대상보도	KNS뉴스통신 2017년 7월 28일자 Health & Life면 「[의료정보] 보기 싫은 처진살, 주름에 ‘큐티리프트’ 등 실리프팅 도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745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
대상보도	KNS뉴스통신 2017년 8월 4일자 인터뷰면 「[인터뷰] 신○○ 원장 “투명교정도 나에게 맞는 방법 선택해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p>

	<p>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746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
대상보도	KNS뉴스통신 2017년 8월 22일자 Health & Life면 「[의료정보] ○○○○○역 치과교정 전문 치과의원 ○○교정치과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747호	주식회사 메디팜스
대상보도	메디팜스투데이 2017년 8월 21일자 한방/바이오면 「수원〇〇한의원, 집중치료병상 갖춰 23일 승격 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74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748호	보건뉴스	2017년 8월 21일	메디뉴스	수원〇〇한방병원, 승격 오픈·원스톱 한·양방 진료시스템 구축	인터넷뉴스
제2017-749호	아이팜뉴스	2017년 8월 21일	한 의사· 한 의약	수원〇〇한의원, 수원〇〇한방병원으로 23일 승격 오픈	인터넷뉴스
제2017-750호	Watcherdaily	2017년 8월 21일	의료계	수원〇〇한방병원, 23일 승격 오픈	인터넷뉴스

제2017-751호	베이비뉴스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베이비뉴스 2017년 8월 17일자 생활/건강면 「〇〇〇 한의원, 19일 의정부 〇〇〇한의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752호	아크로팬
대상보도	아크로팬 2017년 8월 17일자 산업면 「○○○ 한의원, 의정부 ○○○한의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753호	강서양천일보
대상보도	강서양천일보 2017년 8월 14일자 건강면 「‘우리동네 주치의’ ○○○○○○○의원 변○○ 원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754호	주식회사 브레인박스벤처마크
대상보도	브레인박스 2017년 8월 7일자 뉴스면 「○○○ ‘○○ ○○○의원’, ○○동 ‘○○○○의원’으로 확장 이전 실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p>

	<p>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755호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대상 보도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8월 29일자 헬스면 「○○○○○○, 튼튼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756호	재단법인 씨비에스
대상보도	CBS-R 2017년 9월 5일 08:00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인터뷰 (2)] “부산 여중생 폭행 실상과 소년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방송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보도는 폭행사건 목격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잔인한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757호	연예스포츠방송
대상보도	연예스포츠방송 2017년 9월 5일자 핫이슈면 「끔찍?잔혹?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6조(아동 청소년의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미성년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미성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 및 소년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758호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투스타뉴스 2017년 9월 8일자 핫이슈면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와 친구들 반응은? “믿는다 알고있제 사랑해 흔들리지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6조(아동 청소년의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미성년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미성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 및 소년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759호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웍
대상보도	스포츠한국 2017년 10월 5일자 시사면 「한국인 판사 부부, 광에서 현지 연행 후 석방 ‘벌금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미국에서 차량 내 아동 방치 혐의를 받은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760호	아크로팬
대상보도	아크로팬 2017년 10월 9일자 사회면 「'충격' '어금니아빠' "왜 도와주냐. 어차피 죽을 애를" 악플 공개...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누굴 원망하겠냐" 과거 인터뷰 주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6조(아동 청소년의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살인)의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미성년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미성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 및 소년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76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761호	울산종합일보	2017년 10월 12일	햇이슈	'어금니아빠의 행복' 저자 이영학, 희망에서 다시 절망 속으로... 거대백악중에 시달린 삶에서 행복 찾나 했지만	인터넷뉴스
제2017-762호	인터넷 제주일보	2017년 10월 12일	핫클릭	'어금니아빠의 행복' 저자 이영학, 거대백악중에 시달린 삶에서 행복 찾나 했지만 다시 절망 속으로	인터넷뉴스
제2017-763호	인터넷 중부일보	2017년 10월 11일	사회	'어금니 아빠' 뜻 이어 '어금니 아빠의 행복' 책 재조명...천사의 가면 '충격'	인터넷뉴스
제2017-764호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2017년 10월 11일	사회	어금니 아빠 부인 최○○, 미모, 문신, 유서, 사진, "자살 미스터리?", "사건 전말정리", "살해이유와 목적은?"	인터넷뉴스
제2017-765호	인터넷 환경일보	2017년 10월 13일	사회·문화	이영학 신상 공개, 누리꾼들... "인권을 보장해야 할 만한 인격조차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터넷뉴스
제2017-766호	조선pub	2017년 10월 10일	사회	'어금니 아빠'의 두 얼굴... 사건을 풀 열쇠는?	인터넷뉴스
제2017-767호	e글로벌이코노믹	2017년 10월 11일	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뜻 모를 엽기행각... "행복하다"던 딸 비보는 어디로?	인터넷뉴스

제2017-768호	뉴스프리존
대상보도	뉴스프리존 2017년 10월 13일자 사회면 「이영학, 음란행위하다...깨어난 김양 목졸라 숨지게해,.. 생존 ‘24시간 행적’ 풀기 집중」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추행을 동반한 살인 사건의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76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769호	디스패치뉴스	2017년 10월 12일	TODAY	이영학, 24시간 음란행위하다 여중생 깨어나 저항하니 살해	인터넷뉴스
제2017-770호	부산닷컴	2017년 10월 13일	사회	이영학, 수면제 먹인 후 24시간 음란행위하다 깨어나 반항하자 살해	인터넷뉴스
제2017-771호	스포츠조선닷컴	2017년 10월 12일	라이프	이영학, 24시간 음란행위하다 여중생 깨어나 저항하니 살해	인터넷뉴스
제2017-772호	아시아경제닷컴	2017년 10월 13일	사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음란행위’ 위해 범행	인터넷뉴스
제2017-773호	인사이트	2017년 10월 13일	사회	이영학, 수면제 먹인 여중생 상대로 ‘음란행위’...깨어나 저항하자 살해	인터넷뉴스
제2017-774호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0월 12일	사회	이영학, 여중생에 음란행위하다 깨어나 저항하자 살해	인터넷뉴스
제2017-775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10월 13일	사회	24시간 희롱 끝에...이영학, 잠깐 여중생 저항하자 살해	인터넷뉴스
제2017-776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7년 10월 13일	사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여중생 수면제 먹이고 24시간 음란행위하다 저항하니 살해	인터넷뉴스
제2017-777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7년 10월 13일	사회	이영학, 24시간 음란행위하다 여중생 깨어나 저항하니 살해	인터넷뉴스

제2017-778호	스마트마이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스워커 2017년 10월 13일자 고용·인권·윤리면 「[뉴스워커] ‘어금니 아빠’ 부녀, 시체 유기 후 수면, 아내 성매매 의혹까지…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어금니아빠’ 사건의 행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추행을 동반한 살인 사건의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77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779호	뉴스인사이드	2017년 10월 13일	사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성기능 장애로 성폭행 불가능했다 “죽은 아내랑 닮아서…”	인터넷뉴스
제2017-780호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2017년 10월 13일	사회	이영학, 잠든 김양 앞에 두고 음란행위… 아내 연상돼 범행?	인터넷뉴스
제2017-781호	조선닷컴	2017년 10월 13일	사건·사고	“‘어금니 아빠’, 딸 친구에 음란행위…깨어나 저항하자 살해”	인터넷뉴스

제2017-782호	투데이미디어그룹 주식회사
대상보도	국민체육진흥신문 2017년 8월 26일자 사회면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 및 자살 장소를 공개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살 동기 및 경위 등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p> <p>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 미수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7-78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783호	글로벌다문화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84호	글로벌동포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85호	기부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86호	뉴스나우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87호	다이버시티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88호	대한보건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89호	명품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90호	미디어영상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91호	방문판매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92호	법률정보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93호	보험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94호	복지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95호	뷰티웰니스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796호	사회인골프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97호	사회인야구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98호	사회인축구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799호	세무회계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00호	소방행정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01호	숙박여행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02호	슈퍼리치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03호	식음료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04호	약국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05호	연예가중계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06호	영업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07호	유통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08호	인터넷 교육정보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09호	인터넷 뉴스데스크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10호	인터넷 분양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11호	인터넷 어촌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12호	인터넷 울산타임즈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13호	인터넷 임대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14호	인터넷 정치리더스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815호	인터넷 종교문화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16호	인터넷 창조경제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17호	인터넷 한국사회복지뉴스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18호	인터넷 한국화장품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19호	인터넷타임즈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20호	전통시장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21호	제약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22호	증권금융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23호	창업경제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24호	커뮤니케이션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25호	커피뉴스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26호	콘텐츠산업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27호	투데이미디어그룹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28호	한국공정거래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29호	한국노사정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30호	한국육아신문	2017년 8월 26일	사회	중3 여학생 8층 옥상서 투신	인터넷뉴스

제2017-831호	아이팍뉴스
대상보도	아이팍뉴스 2017년 9월 19일자 한의사·한의약면 「인천○○한방병원, 19일 ○○동에 총 82병상 규모로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83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6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832호	인터넷 브리τζ경제신문	2017년 9월 19일	헬스	인천○○한방병원, 인천 ○○동에 개원	인터넷뉴스
제2017-833호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9월 19일	문화·스포츠	‘비수술 척추치료’ 인천○○한방병원 개원	인터넷뉴스
제2017-834호	인터넷 세계 타임즈	2017년 9월 19일	세계스포츠	인천○○한방병원, 9월 19일 인천 ○○동에 개원	인터넷뉴스
제2017-835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2017년 9월 19일	라이프	인천○○한방병원, 19일 인천 ○○동에 개원	인터넷뉴스
제2017-836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17년 9월 19일	의학·과학	○○○○, 인천시 ○○동에 인천○○한방병원 개원	인터넷뉴스
제2017-837호	인터넷 헬스조선	2017년 9월 19일	뉴스	인천○○한방병원, 오는 19일 ‘○○동’ 개원	인터넷뉴스

제2017-838호	주식회사 일간금융
대상보도	대한금융신문 2017년 9월 27일자 Hot Issue면 「교통사고후유증치료, ○○ ○한의원 한방치료로 효과적인 치료 가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839호	주식회사 에이치앤씨텔레그래프
대상보도	데일리그리드 2017년 9월 4일자 산업일반면 「○○○○ ○○점 오픈.. ‘안전성 선 검증에 최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p>

	<p>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840호	업코리아
대상보도	업코리아 2017년 9월 6일자 소상공인뉴스면 「[기자탐방] ○○○치과 류○○ 원장 “체계적인 시스템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신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841호	주식회사 문화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문화일보 2017년 9월 20일자 사회면 「재활치료 전문 대전 ○○○ 병원 23일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842호	베이비뉴스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베이비뉴스 2017년 9월 1일자 뉴스면 「소아질환 중점진료 ○○○○한의원 47호 성북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843호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상보도	연합뉴스 2017년 10월 12일자 사회면 「이영학, 여중생 의식 돌아와 저항하니 살해…음란행위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성추행을 동반한 살인 사건의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844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대상보도	인터넷 제주일보 2017년 10월 26일자 핫클릭면 「윤○○, 집안 얼마나 대단한가 보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유명 대기업 사장의 부친이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유족의 성명, 나이, 이력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84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845호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2017년 10월 27일	일반	○○소프트 김○○ 부인 윤○○ 부친 살해 피의자는 강남 고급부동산 중개업자, 막대한 빚	인터넷뉴스
제2017-846호	e글로벌이코 노믹	2017년 10월 27일	뉴스	김○○ ○○소프트 대표 가계도 관심 쏠려… 윤○○ 사장 ‘엘리트’ 집안	인터넷뉴스

제2017-847호	주식회사 조선방송
대상보도	<p>TV조선 2017년 11월 6일자 21:00 <종합뉴스9> 프로그램 「[단독] TV 영화 보는 이견희 회장…3년 반만에 모습 공개」 제하의 보도 「[단독] 의료 전문가 “이견희 회장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 제하의 보도</p> <p>TV조선 2017년 11월 7일자 21:00 <종합뉴스9> 프로그램 「[단독] 휠체어에 앉아 TV보는 이견희 회장」 제하의 보도</p> <p>TV조선 2017년 11월 8일자 07:30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단독] 휠체어에 앉아 TV 보는 이견희 회장」 제하의 보도</p> <p>TV조선 2017년 11월 8일자 21:00 <종합뉴스9> 프로그램 「반도체신화 이견희 회장…병상 신화 가능할까」 제하의 보도</p> <p>TV조선 2017년 11월 8일자 22:00 <탐사보도 세븐 제12회> 프로그램 「이견희 회장 살아있다 - 삼성병원 20층 관찰보고」 제하의 보도</p>
매체구분	방송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보도는 유명 대기업 회장의 병상 모습을 공개하고, 원거리에서 촬영된 영상만으로 그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여 보도하였다. 비록 그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인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의 병상 모습과 건강 상태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사적 영역에 해당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p> <p>이에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84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7건)

- 게재순서는 의결번호순이 원칙이나 제2017-884호~제2017-909호의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하여 아래 목록에 포함함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848호	뉴스1코리아	2017년 11월 7일	방송·TV	“이건희 회장 살아있다”...‘세븐’, 60일간 병상 생활 포착	뉴스통신
제2017-884호	국제뉴스	2017년 11월 7일	연예	“이건희 회장 살아있다” 삼성병원 20층 이건희 병실 최초 공개	뉴스통신
제2017-885호	뉴스엔	2017년 11월 9일	사회	[어제TV] ‘세븐’ 이견희 회장 사망설? 근거없는 낭설 팩트체크	인터넷뉴스
제2017-886호	더팩트	2017년 11월 12일	생생뉴스	[TF비즈토크] 이견희 회장 근황 보도, 2년 전과 무엇이 다른가요?	인터넷뉴스
제2017-887호	마이데일리	2017년 11월 7일	사회	“이건희 회장 살아있다”...TV조선 ‘세븐’, 삼성병원 병실 최초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888호	매경닷컴	2017년 11월 7일	뉴스	‘탐사보도 세븐’ 이견희 회장 건강 호전? 병상생활 공개에 공금증↑	인터넷뉴스
제2017-889호	세계닷컴	2017년 11월 9일	TV·방송	‘세븐’ 이견희 삼성 회장 움직임 ‘포착’... “자가 호흡 中”	인터넷뉴스
제2017-890호	스타뉴스	2017년 11월 7일	최신뉴스	건강 호전? ‘탐사보도 세븐’, 이견희 병상 생활 첫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891호	스포츠조선닷컴	2017년 11월 7일	연예	“이건희 회장 살아있다”...‘세븐’ 이견희 병상 생활 최초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892호	스포츠한국	2017년 11월 7일	연예	‘세븐’ 뒷자리까지 봐둔 삼성, 이견희 회장 병실의 진실은	인터넷뉴스
제2017-893호	오에스이엔(OSE N)	2017년 11월 7일	방송	“이건희 회장 살아있다”...‘세븐’ 삼성병원 20층 관찰보고	인터넷뉴스
제2017-894호	이타임즈	2017년 11월 7일	종합	이견희 회장 뒷자리까지 봐줬다는데....’진실은?’	인터넷뉴스
제2017-895호	인사이트	2017년 11월 7일	사회	“이건희 회장, 굳건히 살아있다”...3년 반만에 ‘병상 모습’ 최초 공개 (영상)	인터넷뉴스
제2017-896호	인터넷 뉴스웨이	2017년 11월 7일	산업	이견희 삼성 회장, TV조선 통해 병상 모습 공개돼	인터넷뉴스
제2017-897호	인터넷 브리징경제신문	2017년 11월 7일	문화	“이건희 회장은 살아있다”...TV조선 ‘세븐’ 삼성병원 20층 VIP병상 최초 공개	인터넷뉴스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898호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1월 8일	방송·연예	‘탐사보도 세븐’ 삼성병원 20층 이견희 회장 병실 생활 관찰보고	인터넷뉴스
제2017-899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2017년 11월 7일	연예	이견희 회장, 호전됐다?...TV조선 “의사소통 할 만큼 회복”	인터넷뉴스
제2017-900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2017년 11월 7일	최신뉴스	“이견희 회장 살아있다”...‘세븐’ 삼성병원 20층 관찰보고	인터넷뉴스
제2017-901호	인터넷 스포츠투데이M	2017년 11월 7일	연예	“이견희 회장 살아있다”...베일에 싸인 이견희 병상 생활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902호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2017년 11월 7일	사회	이견희 현재상태, “동영상” 간호사에게 뭐라고 했나?	인터넷뉴스
제2017-903호	조선닷컴	2017년 11월 7일	연예	“이견희 회장 살아있다”...‘세븐’ 이견희 병상 생활 최초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904호	조이뉴스24	2017년 11월 7일	연예	[볼만한TV]“만화 시청” 이견희 회장, 병상생활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905호	코리아뉴스타임즈	2017년 11월 7일	사회	이견희 추정 인물, 간호사와 대화 장면 포착	인터넷뉴스
제2017-906호	티비리포트	2017년 11월 7일	TV	“이견희 회장 만화영화 본다”...‘세븐’ 병상 최초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907호	한경닷컴	2017년 11월 7일	연예	“이견희 회장 살아있다”...‘세븐’ 삼성병원 VIP 병실 최초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908호	(주)뉴스투데이	2017년 11월 7일	직장인	[뉴투분석] 삼성 이견희 회장 건강 상태 알려주는 4가지 사실	인터넷뉴스
제2017-909호	TV Daily	2017년 11월 7일	방송	‘세븐’, 삼성병원 20층 이견희 병상 생활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849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11월 7일자 시사면 「상태 호전됐다...병상서 TV 보고 간호사와 대화한 이견희 회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보도는 유명 대기업 회장의 병상 모습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인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의 병상 모습은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사적 영역에 해당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p> <p>이에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7-84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2건)

- 게재순서는 의결번호순이 원칙이나 제2017-910호~제2017-960호의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하여 아래 목록에 포함함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850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7년 11월 7일	최신기사	사망설 나돌았던 이건희 회장, 병상모습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910호	글로벌경제 신문	2017년 11월 7일	사회	텔레비전 보는 병상 속 일상...이건희 회장, 무성했던 말들 사라지다	인터넷뉴스
제2017-911호	나눔뉴스	2017년 11월 7일	사회	이건희 현재 상태,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니...침대에 앉아 tv시청	인터넷뉴스
제2017-912호	녹색경제신문	2017년 11월 7일	We코노미	이건희 회장, 사망설 최초 유포자는 일베 회원...대체 왜?	인터넷뉴스
제2017-913호	뉴스브라이트	2017년 11월 7일	문화연예	이건희, 관계자가 밝힌 건강 상태 눈길 “간병인 도움 받아 휠체어 타고 병실 복도 오가기도”	인터넷뉴스
제2017-914호	뉴스인사이드	2017년 11월 7일	사회	이건희 삼성 회장, 근황 모습 포착...이재용 말실수에 눈길 “회장님 살아계실 때...”	인터넷뉴스
제2017-915호	뉴스천지	2017년 11월 8일	뉴스	이건희, 3년 6개월 만에 포착... 병실서 TV 시청 눈길	인터넷뉴스
제2017-916호	뉴스컬처	2017년 11월 7일	HERALD	이건희 회장 남달랐던 건강관리, 18년 넘어온 고비의 연속	인터넷뉴스
제2017-917호	뉴스타운	2017년 11월 7일	경제/IT	‘이건희는 살아있다’, 병실서 TV로 영화보고 간호사와 의사소통 포착	인터넷뉴스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918호	로이슈	2017년 11월 7일	찾이슈	이건희 회장, 텔레비전 보는 병상 속 일상...무성했던 말들 사라지다	인터넷뉴스
제2017-919호	메트로신문	2017년 11월 7일	뉴스	이건희, '사망설' 쏙 들어가게 만드는 '목소리의 형태' 애니 시청 모습	인터넷뉴스
제2017-920호	미디어펜	2017년 11월 7일	경제	이건희 회장 건강 회복? 삼성측 "치료 과정 속 오해"	인터넷뉴스
제2017-921호	부산닷컴	2017년 11월 7일	사회	이건희 회장, TV만화 보며 대화까지?...TV조선, 병상 모습 보도	인터넷뉴스
제2017-922호	스포츠Q	2017년 11월 8일	컬처Q	'탐사보도 세븐' 삼성 이견희 회장 병실 취재... 삼성병원 20층 60일 동안 기록	인터넷뉴스
제2017-923호	시선뉴스	2017년 11월 7일	뉴스	이건희 회장, '사망설' 최초 유포자는 누구?	인터넷뉴스
제2017-924호	아시아경제 닷컴	2017년 11월 7일	사회	이건희, 3년6개월 만에 포착...TV영화 보는 등 간호사와 의사소통	인터넷뉴스
제2017-925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2017년 11월 7일	연예· 스포츠	이건희 회장, 병실서 TV 시청 포착...전원책 "사망설도 여러 차례 나온다"	인터넷뉴스
제2017-926호	아이뉴스24	2017년 11월 7일	기업	이건희 회장, 상태 호전?...삼성, "여전히 의식 없어"	인터넷뉴스
제2017-927호	업다운뉴스	2017년 11월 7일	경제	이건희 회장, 병상서 TV 시청까지? 흥흥한 '건강 이상설' 떨쳐버리나	인터넷뉴스
제2017-928호	울산종합일보	2017년 11월 7일	뉴스	이건희,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니... 이야기 주고 받을 정도로 병의 증세 나아졌나?	인터넷뉴스
제2017-929호	웹데일리	2017년 11월 7일	찾이슈	무성했던 말들 사라지다...이건희 회장, 텔레비전 보는 병상 속 일상	인터넷뉴스
제2017-930호	이코노미톡 뉴스	2017년 11월 7일	찾이슈	이건희, "관찰 방송 관찰은건가" 설전에 '다시보기'까지	인터넷뉴스
제2017-931호	인터넷 경상일보	2017년 11월 7일	연예/시사	'사망설' 이견희, 3년6개월 만에 '포착'..."병실서 日 애니메이션 보더라"	인터넷뉴스
제2017-932호	인터넷 경인일보	2017년 11월 7일	산업· 기업	이건희 삼성 회장 '상태 호전?'... 병실서 TV로 영화보고 간호사와 의사표시 나눠	인터넷뉴스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933호	인터넷 국제신문	2017년 11월 8일	경제	이건희 침대에 앉아 TV시청 포착에 이목 집중 삼성측 “의사 소통 불가능”	인터넷뉴스
제2017-934호	인터넷 기호일보	2017년 11월 6일	레저/연예	이건희, “만화 보면서 간호사와 소통” 보도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935호	인터넷 뉴스웍스	2017년 11월 7일	정치· 사회	‘사망설’ 돌던 삼성 이건희 회장, 병원서 TV시청 장면 포착	인터넷뉴스
제2017-936호	인터넷 무등일보	2017년 11월 7일	뉴스센터	이건희, 삼성家 가족력은 암? “아버지 폐암·위암...형도 암으로 사망?”	인터넷뉴스
제2017-937호	인터넷 비주얼다이브	2017년 11월 7일	사회	이건희 회장이 병실서 본 일본 애니메이션...내용은?	인터넷뉴스
제2017-938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11월 7일	경제	“이건희 회장, 병실서 TV로 영화 시청...간호사와 의사 소통”	인터넷뉴스
제2017-939호	인터넷 스페셜경제	2017년 11월 7일	국제	이건희, 18년 거둬들인 ‘고비’... 건강관리법도 남달랐다?	인터넷뉴스
제2017-940호	인터넷 스포츠타이머	2017년 11월 7일	최신뉴스	TV조선 ‘세븐’, 이건희 회장 근황 공개?...물음표와 느낌표 사이	인터넷뉴스
제2017-941호	인터넷 신아일보	2017년 11월 7일	실시간 이슈	‘사망설’ 돌던 이건희 근황?... TV보고 간호사랑 대화	인터넷뉴스
제2017-942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7년 11월 7일	Visual	“이건희 회장, 병실서 TV로 일본 애니 보고...간호사와 의사 소통”	인터넷뉴스
제2017-943호	인터넷 영남일보	2017년 11월 7일	사회	60일간 관찰한 이건희 회장 병실, 이승엽 홈런 치면 눈 크게 뜬다던 말 새삼 ‘눈길’	인터넷뉴스
제2017-944호	인터넷 위클리오늘	2017년 11월 7일	산업	“이건희 회장 살아있다” 주기적 노출 왜?	인터넷뉴스
제2017-945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2017년 11월 7일	정치· 사회	이건희 회장, 병실서 일본 애니메이션 감상... 3년 만에 모습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946호	인터넷 이코노미리뷰	2017년 11월 7일	COMPANY	이건희 회장, 건재하다?	인터넷뉴스
제2017-947호	인터넷 일간리더스 경제신문	2017년 11월 7일	핫이슈	이건희, 어떻게 지내고 있나 봤더니...이야기 주고 받을 정도로 병의 증세 나아진 듯	인터넷뉴스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948호	인터넷 제민일보	2017년 11월 7일	연예	이건희, 심근경색 이겨냈나?...“심폐소생술 30회 가량, 4분만 지나도 뇌 손상 입는데...”	인터넷뉴스
제2017-949호	인터넷 제주일보	2017년 11월 7일	뉴스	이건희,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길래? 이야기 주고 받을 정도로 병의 증세 나아진 듯...	인터넷뉴스
제2017-950호	인터넷 중부일보	2017년 11월 7일	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병상 모습 포착...간호사와 대화하며 TV 시청	인터넷뉴스
제2017-951호	인터넷 충청매일	2017년 11월 6일	뉴스	이건희, “일본 만화에 의사소통 까지” 영상보도 ‘눈길’	인터넷뉴스
제2017-952호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2017년 11월 8일	일반	사망설 이건희 회장, 애니 ‘목소리의 형태’ 시청, 건강회복?	인터넷뉴스
제2017-953호	인터넷 한국 스포츠경제	2017년 11월 7일	사회/문화	“사망설까지 나돌았다”...이건희 회장 병상 모습 공개	인터넷뉴스
제2017-954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7년 11월 7일	문화	이건희, 18년 계속된 고비들...남달랐던 건강관리법	인터넷뉴스
제2017-955호	조세일보	2017년 11월 7일	사회	이건희 회장 건강 호전?...“다애니 시청하고 간호사와 대화” 보도 주목	인터넷뉴스
제2017-956호	축제뉴스(페 스티벌뉴스)	2017년 11월 7일	인물 포커스	이건희 삼성 회장 견재...침대에 앉아 TV시청	인터넷뉴스
제2017-957호	톱스타뉴스	2017년 11월 7일	사회	이건희, 생사 확인 뉴스 보도 “이 회장은 살아있다” 화제...‘목소리의 형태’ 관람	인터넷뉴스
제2017-958호	푸드경제TV	2017년 11월 7일	소셜이슈	텔레비전 보는 병상 속 이건희 회장, 무성했던 말들 사라지다...	인터넷뉴스
제2017-959호	한인협	2017년 11월 7일	정치&외교	이건희 회장 “살았나 죽었나?”	인터넷뉴스
제2017-960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2017년 11월 6일	뉴스	TV조선이 이건희의 병상 모습을 공개했다	인터넷뉴스

제2017-851호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상보도	연합뉴스 2017년 10월 7일자 포토면 「깜 경찰이 공개한 차량 아이 방치 변호사·판사 부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미국에서 차량 내 아동 방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 풀려난 부부의 성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85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852호	세계닷컴	2017년 11월 10일	사회	‘깜 자녀방치’ 판사, 구두 경고 받아…法 “아동학대 아니고 방치 시간도 20분”	인터넷뉴스
제2017-853호	스포츠조선 닷컴	2017년 10월 10일	사회	‘깜 체포’ 판사 소명자료 제출…법원 징계 고민	인터넷뉴스
제2017-854호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10월 31일	사회	[단독] 깜서 차에 아이 방치했던 판사, 법원 징계 안 받는다	인터넷뉴스
제2017-855호	위키트리	2017년 10월 31일	사건사고	깜에서 아이 방치한 판사 엄마에 법원 “징계 없을 것”	인터넷뉴스
제2017-856호	인터넷 경인일보	2017년 11월 10일	사회	○○지법, ‘깜서 자녀 차량방치 체포’ 판사에 징계없이 구두경고	인터넷뉴스
제2017-857호	인터넷 신아일보	2017년 10월 10일	사회	‘깜 아이 방치’ 판사, 소명자료 제출… 法 “징계 여부 검토”	인터넷뉴스
제2017-858호	인터넷 울산매일	2017년 10월 8일	포토	깜 경찰이 공개한 차량 아이 방치 변호사·판사 부부	인터넷뉴스
제2017-859호	인터넷 한국일보	2017년 10월 8일	사회	○○지법, 깜서 체포된 ○모 판사 조사	인터넷뉴스
제2017-860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7년 10월 31일	사회	깜서 아이 방치 판사…한국 법원의 징계는 없었다	인터넷뉴스

제2017-861호	언론협동조합담쟁이
대상보도	현장언론 민플러스 2017년 9월 27일자 민족면 「추석명절, 가족은 만나게 해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862호	주식회사 조선방송
대상보도	TV조선 2017년 11월 6일자 07:30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집단 성관계 알선하고 음란물 유포...직업·사진 확인 '회원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범죄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 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86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863호	인터넷 일간리더스경 제신문	2017년 11월 6일	하이슈	집단 성매매, 야한 동영상 그대로 하고 싶은 판타지? “부끄럽지도 않나?”	인터넷뉴스
제2017-864호	베타뉴스	2017년 11월 6일	종합	집단 성매매 실태, “만족했다”던 충격 후기글 어땠나	인터넷뉴스

제2017-865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일요서울 2017년 11월 13일자 30면 「15명이 한 방에서...‘갱뱅’ 어떻게 이뤄지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성범죄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86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866호	일요서울	2017년 11월 10일	사회	15명이 한 방에서...‘갱뱅’ 어떻게 이뤄지나	인터넷뉴스
제2017-867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7년 11월 6일	정치·사회	집단성매매, 초대경험자 “여자 사람취급 안해, 성고문은 기본으로 일어나”	인터넷뉴스
제2017-868호	인터넷 제민일보	2017년 11월 6일	연예	집단성매매, 초대경험男 충격발언 “여자 사람취급 안해, 성고문은 기본이다”	인터넷뉴스

제2017-869호	주식회사 경인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경인일보 2017년 11월 5일자 검찰·경찰·법원면 「“교복 입은 대학생 나와요” 수원·안양 모텔서 집단 성매매(갱뱅)적발...사진도 유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기사는 성범죄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7-86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870호	디트news24	2017년 11월 6일	뉴스	‘집단 성매매’ 참여자 “좋아서 했다”...마약 투여 후 환각상태에서?	인터넷뉴스
제2017-871호	수원일보	2017년 11월 6일	연예/이슈 / 핫클릭	‘집단 성매매’ 환각상태로 즐겼나? “좋아서 했다”...마약 투여 의혹까지	인터넷뉴스
제2017-872호	인터넷 무등일보	2017년 11월 6일	뉴스센터	‘집단 성매매’ 마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매매 했나?...참여자 “좋아서 했다”	인터넷뉴스
제2017-873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7년 11월 6일	Visual	교복 기모노 입고 한 번에 18명과 ‘집단 성매매’...“좋아서 했다?”	인터넷뉴스
제2017-874호	인터넷 중부일보	2017년 11월 6일	사건.사고	수원·안양 모텔서 이뤄진 집단 성매매 무더기 적발...참가자 대부분 “좋아서 했다”	인터넷뉴스

제2017-875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투리 2017년 9월 26일자 사건사고면 「“장 보러 나왔는데...” 갑자기 쭈그러 앉아 아이 낳는 여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기사는 길거리에서 출산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876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상 보도	중도일보 2017년 10월 18일자 20면 「의술+인술 펼치는 진정한 명의 의사·봉사·칼럼니스트로... 다동이 아빠는 언제나 '열공'중」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877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상 보도	인터넷 중도일보 2017년 10월 17일자 정치/행정면 「[브랜드대전] 인술로 성형하는 ○○성형외과 이○○ 원장」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878호	베이비뉴스 주식회사
대상 보도	인터넷 베이비뉴스 2017년 10월 23일자 생활/건강면 「여성한방 네트워크 ○○한의원 대전점, 오는 30일 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879호	주식회사 뉴스씨
대상 보도	인터넷 공감신문 2017년 10월 31일자 생활/문화면 「여성 질환 네트워크, ‘○○한의원 대전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880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
대상보도	KNS뉴스통신 2017년 10월 21일자 사회면 「창원○○○피부과 23일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881호	주식회사 수원일보사
대상 보도	수원일보 2017년 10월 18일자 사회면 「척추관절질환 특화 ○○○○병원 김포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882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 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0월 25일자 사회면 「종로의 새로운 트렌드, ○○○ 성형외과 오픈...“강남 이상의 성형을 이제는 종로에서”」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883호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대상 보도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10월 25일자 헬스면 「○○○○병원 개원, 은평○○○병원 10여년 노하우 담아 확장이전」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 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게재순서는 의결번호순이 원칙이나 제2017-884호~제2017-960호는 앞에 게재된 시정권고 결정건과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하여 해당 건의 목록에 수록함. 동일건 및 해당 페이지는 아래 표 참조

안 건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건	페이지
제2017-884호~제2017-909호	제2017-847호	P243~244
제2017-910호~제2017-960호	제2017-849호	P245~248

제2017-961호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상보도	연합뉴스 2017년 11월 21일자 포토면 「대피소 텐트에서 휴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지진 피해 이재민이 생활하는 대피소 현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재민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96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962호	인터넷 매일신문	2017년 11월 21일	포토뉴스	대피소 텐트에서 휴식	인터넷뉴스
제2017-963호	인터넷 아주경제	2017년 11월 23일	국내일반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 주2회 목욕..빨래는 빨래방에.. 탈의실 미설치	인터넷뉴스

제2017-964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7년 11월 17일자 포토면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지진 피해 이재민이 생활하는 대피소 현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재민의 초상을 과도하게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96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965호	디오데오	2017년 11월 17일	전국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	인터넷뉴스
제2017-966호	인터넷 추적사건25시	2017년 11월 17일	헤드라인 뉴스	포항지진, 국민들 “안전문제 다시 생각” 계기돼	인터넷뉴스

제2017-967호	주식회사 영남일보				
대상보도	영남일보 2017년 11월 17일자 5면 「“언제 또 덮칠지...” 시민들 ‘지진 엑소더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지진 피해 이재민의 대피 현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대피소에서 생활하거나 대피소로 이동 중인 이재민의 초상을 과도하게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96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968호	인터넷 영남일보	2017년 11월 17일	사회	“언제 또 덮칠지...” 시민들 ‘지진 엑소더스’	인터넷뉴스
제2017-969호	뉴스스	2017년 11월 16일	사회	대피한 어린이들과 반려견 “무서워요”	뉴스통신

제2017-970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p>뉴스1코리아 2017년 11월 19일자 포토면</p> <p>「거처 옮기는 ‘포항지진’ 이재민들」 제하의 보도</p> <p>「이 추위에 어디로」 제하의 보도</p> <p>「집 대신 또 대피소로」 제하의 보도</p> <p>「지진 이재민...생활용품 머리에 이고 대피소로」 제하의 보도</p> <p>「거처 옮기는 이재민」 제하의 보도</p> <p>「할아버지와 손주의 피난」 제하의 보도</p>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지진으로 인해 이재민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이재민의 초상을 과도하게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97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971호	경향신문	2017년 11월 17일	2면	지진으로 아파트 ‘기우뚱’ 긴급 대피	중앙일간지
제2017-972호	인터넷 경향신문	2017년 11월 16일	포토·영상	[포토뉴스]지진으로 아파트 ‘기우뚱’ 긴급 대피	인터넷뉴스
제2017-973호	e머니투데이	2017년 11월 19일	사회	포항 지진 피해 시설 87% ‘응급 복구’ 완료	인터넷뉴스
제2017-974호	뉴스투어	2017년 11월 19일	대구/경북	포항 지진 부상자 77명, 재산피해 571억...학교 피해 커	인터넷뉴스
제2017-975호	뉴스천지	2017년 11월 17일	대구/경북	[속보] 포항지진, 17일 오후 6시 57분께 콩소리와 함께 여진	인터넷뉴스

제2017-976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7년 11월 17일자 대구/경북면 「경북모금회, 포항 지진 피해 성금 모금 실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지진 피해 이재민이 생활하는 대피소 현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부 이재민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977호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11월 17일자 사회면 「경북모금회, 포항 지진 피해 성금 모금 실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지진 피해 이재민이 생활하는 대피소 현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부 이재민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978호	주식회사 동아닷컴
대상보도	동아닷컴 2017년 11월 13일자 국제면 「2012년 美 발각 뒤집은 마이애미 ‘좀비 마약’ 사건, 노숙인 얼굴 물어뜯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외국에서 발생한 신체 훼손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학적인 폭력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979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11월 13일자 사회 최신면 「‘좀비 마약’ 섬뜩...얼굴 물어뜯고, 사람 심장·뇌 일부 먹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위 기사는 외국에서 발생한 신체 훼손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학적인 폭력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7-980호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대상보도	주간조선 2017년 11월 27일자 18~20면 「JSA 귀순병사로 본 北 기생충 감염 실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북한의 기생충 감염 실태에 관해 보도하면서, 귀순한 북한 병사의 몸속에서 발견된 기생충의 사진을 여과 없이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017-98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981호	인터넷 주간조선	2017년 11월 27일	정치	JSA 귀순병사로 본 北 기생충 감염 실태	인터넷뉴스
제2017-982호	조선pub	2017년 11월 27일	뉴스&이슈	JSA 귀순병사로 본 北 기생충 감염 실태	인터넷뉴스
제2017-983호	인터넷 국제신문	2017년 12월 5일	문화	CNN, 이국종 북한귀순병사 수술 영상 독점공개...기생충 제거모습까지 생생	인터넷뉴스

제2017-984호	주식회사 위클리오늘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위클리오늘 2017년 11월 22일자 사회면 「[동영상]“분노·경악 그 자체”... 유튜브 ‘익산 유기동물 잔혹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 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p>위 기사는 잔인하게 훼손된 동물의 사체가 묘사된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985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상보도	<p>동아일보 2017년 11월 22일자 C3면</p> <p>「“○○동에 신사옥 마련... ‘한방 척추치료의 메카’로 거듭날 것” 제하의 보도</p>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제2017-98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986호	동아닷컴	2017년 11월 22일	IT/의학	[헬스동아] “○○동에 신사옥 마련... ‘한방 척추치료의 메카’로 거듭날 것”	인터넷뉴스
제2017-987호	서울경제	2017년 11월 13일	A14면	‘○○동 시대’ ○○한방병원 한·양방 원스톱 진료 선봬다	중앙일간지
제2017-988호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1월 12일	라이프	○○한방병원, 척추질환자 ‘한의사·의사 한자리 진료’ 선봬다	인터넷뉴스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989호	아주경제	2017년 11월 13일	15면	척추치료 양·한방 협진시스템 도입	중앙일간지
제2017-990호	인터넷 아주경제	2017년 11월 13일	국내일반	○○한방병원, 척추치료 양·한방 협진시스템 도입	인터넷뉴스
제2017-991호	중앙일보	2017년 11월 14일	6면	한방 비수술 치료법으로 척추치료 패러다임 바꾼다	중앙일간지
제2017-992호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11월 14일	사회	[라이프 트렌드] 한방 비수술 치료법으로 척추치료 패러다임 바꾼다	인터넷뉴스
제2017-993호	한국경제	2017년 11월 13일	A19면	○○한방병원 “외국인 초진환자 年 3000명 시대 열겠다”	중앙일간지
제2017-994호	한경닷컴	2017년 11월 12일	한경헬스	○○한방병원 “외국인 초진환자 연 3000명 시대 열겠다”	인터넷뉴스
제2017-995호	국제뉴스	2017년 11월 15일	전국	척추치료의 패러다임...“한방(韓方)이 바꾼다”	뉴스통신
제2017-996호	뉴스1코리 아	2017년 11월 12일	산업	○○한방병원, ○○통신사옥이전... 양·한방협진시스템강화	뉴스통신
제2017-997호	연합뉴스	2017년 11월 14일	최신기사	[인터뷰] ○○한방병원 설립 신○○ 박사 “한의학은 ‘비과학’ 아니다”	뉴스통신
제2017-998호	라포르시안	2017년 11월 13일	의약계· 병원	○○한방병원, ○○동 시대 개막...“한양방 한자리 협진시스템 선택”	인터넷뉴스
제2017-999호	로이슈	2017년 11월 13일	산업	○○한방병원, ○○新사옥으로 이전... “○○동 시대 개막”	인터넷뉴스
제2017-1000호	민족의학신 문사	2017년 11월 13일	뉴스	○○한방병원13일○○新사옥으로이전	인터넷뉴스
제2017-1001호	스포츠조선 닷컴	2017년 11월 13일	뉴스	○○한방병원, ○○ 신사옥 이전... 척추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인터넷뉴스
제2017-1002호	아시아경제 닷컴	2017년 11월 14일	라이프	“한방의 과학·표준화, ○○한방병원 신사옥서 경험하세요”	인터넷뉴스
제2017-1003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2017년 11월 12일	사회	○○한방병원 ○○동 신사옥 이전 “한방 세계화로 제2 도약”	인터넷뉴스
제2017-1004호	이투데이	2017년 11월 12일	기업	○○한방병원, 신사옥으로 이전하고 양·한방 한자리 진료 시작	인터넷뉴스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7-1005호	인터넷 doctor W	2017년 11월 28일	뉴스	○○한방병원,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의료 기관 선정	인터넷뉴스
제2017-1006호	인터넷 국민일보	2017년 11월 13일	시사	○○한방병원 강남본원, 오늘 ○○대로 新사옥으로 이전	인터넷뉴스
제2017-1007호	인터넷 내일신문	2017년 11월 13일	사회	○○한방병원, ○○동시대 개막 ... 13일 ○○ 신사옥으로 이전	인터넷뉴스
제2017-1008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7년 11월 27일	사회	[인터뷰] 이○○ ○○한방병원장, “한·양방 한자리 진료로 ‘한방’ 중심 척추치료 시대열겠다”	인터넷뉴스
제2017-1009호	인터넷 문화일보	2017년 11월 13일	의료·식품	○○한방병원, ○○동 신사옥으로 이전	인터넷뉴스
제2017-1010호	인터넷 브릿지경제 신문	2017년 11월 12일	헬스	○○한방병원, ○○동 시대 개막, 13일 신사옥 이전	인터넷뉴스
제2017-1011호	인터넷 서울신문	2017년 11월 14일	보건·의료	○○한방병원 ○○동 신사옥 이전...협진시스템 구축	인터넷뉴스
제2017-1012호	인터넷 세계 타임즈	2017년 11월 13일	세계 스포츠	○○한방병원 11월 13일 ○○ 新사옥으로 이전, ○○동 시대 개막	인터넷뉴스
제2017-1013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2017년 11월 13일	생활	○○한방병원, 척추치료 패러다임 바꾼다...13일 ○○ 新사옥으로 이전, ○○동 시대개막	인터넷뉴스
제2017-1014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2017년 11월 12일	최신뉴스	○○한방병원, ○○ 신사옥으로 이전...병원장에 이○○	인터넷뉴스
제2017-1015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2017년 11월 12일	라이프	○○한방병원, 13일 ○○ 신사옥 이전... ‘한·양방 한자리 협진’ 등 추진	인터넷뉴스
제2017-1016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7년 11월 13일	일반	○○한방병원 ○○ 新사옥 이전, ‘한방 세계화’ 박차	인터넷뉴스
제2017-1017호	쿠키뉴스	2017년 11월 12일	뉴스	○○한방병원 13일 ○○ 新사옥 이전... “척추치료 한방(韓方)시대 연다”	인터넷뉴스
제2017-1018호	헬스데이 뉴스	2017년 11월 13일	기획취재	척추치료의 패러다임, ‘한방(韓方)’이 바꾼다	인터넷뉴스

제2017-1019호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상보도	중앙일보 2017년 11월 13일자 C2면 「○○○병원 ○○ 분원 오늘부터 진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1020호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11월 13일자 경제면 「[건강한 가족] ○○○병원 ○○ 분원 오늘부터 진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p>

	<p>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1021호	주식회사 에스알비무등일보
대상보도	무등일보 2017년 11월 23일자 9면 「전국 최고의 여성 전문병원 꿈꾼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1022호	주식회사 에스알비무등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무등일보 2017년 11월 23일자 테마뉴스면 「전국 최고의 여성 전문병원 꿈꾼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1023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상보도	중도일보 2017년 11월 15일자 9면 「“언제나 노력하는 병원될 것”」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1024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중도일보 2017년 11월 14일자 건강/의료면 「구○○ 원장 “언제나 노력하는 ○○○내과 될 것”」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1025호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
대상보도	내외경제TV 2017년 11월 14일자 뉴스면 「서초○○○ 재활요양병원, 몸도 마음도 치유되는 힐링의 도약」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p>

	<p>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1026호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대상 보도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11월 27일자 헬스면 「도수치료, 디스크와 통증을 한 번에 개선한다」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1027호	주식회사 보건신문사
대상 보도	보건뉴스 2017년 11월 23일자 메디뉴스면 「○○ ○○○○○○○센터 ‘셀카복시 물광필’ 출시」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1028호	인터넷 격주간 의료정보
대상 보도	인터넷 격주간 의료정보 2017년 11월 23일자 병원·의료면 「○○ ○○○○○○○○센터 ‘셀카복시 물광필’ 출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1029호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대상 보도	여성조선 2017년 12월호 314~315면 「○○성형외과 이○○ 원장에게 듣는 안티에이징 피부 관리법」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1030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 보도	뉴스1코리아 2017년 11월 28일자 산업면 「강남○○○치과, 인천 중심가에 650평 대형 규모 ○○글로벌점 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p>

	<p>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1031호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상보도	연합뉴스 2017년 11월 16일자 사회면 「청주○○○○, 진료과목·전문인력 확대...치과병원 확장이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1032호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대상보도	데일리메디 2017년 11월 20일자 뉴스면 「글로벌 지향 '줄기세포·관절척추' ○○○○병원 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7-1033호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대상 보도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11월 20일자 헬스면 「체계적인 시술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 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7-1034호	일간리더스경제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일간리더스경제신문 2017년 11월 27일자 뉴스면 「○○지구 치아교정 전문 ○○○○○치과 개원, 공급 부족한 ○○역 일대 치아교정 수요 충족 기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재심결정

제2017재심-1호 (원심결정 : 제2017-257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대상보도	SBS-TV 2017년 3월 15일자 <8시 뉴스> 프로그램 「[단독] 靑 실세-친박단체-전경련, 수상한 통화 '포착'」 제하의 보도 「[사실은] 靑 정보 입수 의혹... 탄핵 국면엔 연락 안했다?」 제하의 보도 SBS-TV 2017년 3월 16일자 <8시 뉴스> 프로그램 「[사실은] '관제데모' 당시에도 긴밀한 연락...배후 실체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방송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권고사항	재심청구대상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제2017-257호)을 취소한다.
이 유	<p>재심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대상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함)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특정 시민단체 관계자 간 통화 횟수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정권고 결정 제2017-257호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p> <p>헌법 제18조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2항은 사적인 전화나 통화내용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절차,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제한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언론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공개가 정당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취득과정, 공개의 목적과 경위, 공개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공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그 공개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헌법재판소 2009헌바42, 2012. 8. 30. 참조) 이 사건 보도의 경우, 재심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소명이 없다는 점, 통화자의 실명 등이 기록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화면에 노출하는 등 공개 목적에 비하여 공개정도가 과하다는 점, 보도 당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언론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공개로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 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p> <p>따라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사로 시정권고소위원회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17재심-2호 (원심결정 : 제2017-202호, 제2017-203호)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대상보도	인터넷 미디어워치 2017년 2월 8일자 플라스틱워치면 「[단독] 손석희 서민코스프레의 종말...부촌1번지 평창동 거주 확인」 제하의 보도 인터넷 미디어워치 2017년 2월 12일자 플라스틱워치면 「[포토] 손석희 씨가 MBC 평의원 시절 구매한 평창동 호화 저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청구대상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제2017-202호, 제2017-203호)을 취소한다.
이 유	<p>재심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대상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함)가 손석희 JTBC 사장의 부동산 자산에 초점을 맞춘 보도로, 영향력 있는 언론인인 손석희 사장의 재산현황 및 재산 형성과정은 공적 관심사로서 국민의 정당할 알 권리에 부합하고, 추가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세주소 등을 노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시정권고 결정 제2017-202호, 제2017-203호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p> <p>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며,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이 사건보도가 재심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생활 보호에 있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 살피건대, 손석희 사장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인물’이기는 하나, 재산현황을 공개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니는 고위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상세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인의 재산현황 및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추가제보를 이끌어내는 데 상세주소 등의 공개가 필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가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p> <p>따라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사로 시정권고소위원회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